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정책변화에 따른 부실원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2016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정 재 영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정책변화에 따른 부실원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20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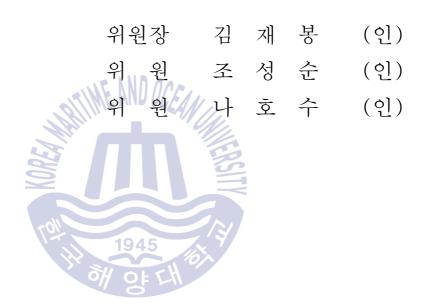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정 재 영



본 논문을 정재영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2월 24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도 목차 ·····	
Ξ	L림 목차 ······	vii
A	bstract ·····	Viii
1.	. 서 론	
	1.1 연구의 목적	• 1
	1.1 연구의 목식	· 2
	1.2.1 연구의 범위	· 2
	1 2 2 여그이 바뱀	. ว
	1.2.2 친구의 경험 1.3 연구의 구성	• 3
2.	저축은행(舊. 상호신용금고)의 발전과정과 구조조정 경과	
	2.1 상호신용금고의 출범기	• 5
	2.1.1 출범배경	• 5
	2.1.3 출범초기의 구조조정	
	2.2 상호신용금고의 성장기	13
	2.3 구조조정 추진경과	
	2.3.1 2011년 이전	18
	2.3.2 2011년 이후	18
	2.4 최근의 구조조정 현황	19
	2.4.1 부실저축은행 정리현황	19
	2.4.2 재편현황	21
	2.4.3 규모별, 특성별 저축은행 구조 전망	23



3.	정부의 정책변화와 저축은행의 부실원인 및 결과와 최근 동향	
	3.1 부실발생 과정과 시대적 구분	27
	3.2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의 문제	28
	3.3 저축은행 부실원인	30
	3.3.1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제한 폐지	30
	3.3.2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31
	3.3.3 저축은행 명칭 변경	32
	3.3.4 소액대출 활성화 조치	35
	3.3.5 저축은행 계열화 허용	35
	3.3.6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36
	3.3.7 시장자율 M&A ······	
	3.4 부실결과 ····································	39
	3.4.1 여신완화 정책과 PF대출의 부실	39
	3.4.2 계열화 허용과 대형화에 기인한 부실	42
	3.4.3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과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3.5 저축은행산업의 현안 및 해결과제	4 5
	3.5.1 명칭변경 재론	46
	3.5.2 예금보험료 인하	46
	3.5.3 일본계 자금의 저축은행 투자 및 영업강화	48
	3.6 저축은행산업의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49
	3.6.1 최근 동업계 동향	
	3.6.2 향후 전망	52
1 .	발전방안	
	4.1 정책의 역할	61
	4.2 발전방안	62
	4.2.1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4.2.2 합병의 유연성 확보	64
	4.2.3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내부통제 강화	65
	4 2 4 지배구즈 개서	66



5.	결	론	•••••	•••••	•••••	 69
	참.	고문	헌			 72
	٦,		-1 41 -1 11	w 1 1	÷ .1	
(부	-독)	1.	권역·자산	규모벌 송자산	수이	77
		2.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	 82
		3.	저축은행	영업하도		 83





표 목 차

〈丑	2-1 >	8.3조치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률과 금융비용 추이	. 6
〈丑	2-2>	유사 서민금융업체 신고 및 인가 현황	. 8
〈丑	2-3>	지역별 인가현황	. 9
〈丑	2-4>	경영실태조사 등급기준	10
〈丑	2-5>	지원자금의 은행별 융자실행 현황	11
		상호신용금고 출범 이후 정비현황	12
〈丑	2-7>	민생계열금고의 정상화 현황	13
〈丑	2-8>	금리자유화 4단계 추진 현황	14
〈丑	2-9>	상호신용금고 자본금 제도의 변화	16
〈丑	2-10>	· 상호신용금고 부실사고 및 사후처리 현황(1983년~1997년) ·········	16
〈丑	2-11	· 상호저축은행 수 변동 추이 ·····	19
〈丑	2-12	· 부실저축은행 정리현황(2011년 이후) ······	20
〈丑	2-13	부실저축은행 인수현황	21
〈丑	2-14	저축은행 시장구도와 특징	22
〈丑	2-15	저축은행 합병현황(2013년 ~ 2015년)	22
〈丑	2-16	주요 경영지표(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23
〈丑	2-17	주요 경영지표(대부업체 인수 저축은행)	23
〈丑	2-18	주요 경영지표(토종 대형저축은행)	24
〈丑	2-19>	주요 경영지표(토종 중대형저축은행)	24
〈丑	2-20>	주요 경영지표(토종 중소형저축은행)	25
〈丑	2-21	주요 경영지표(토종 소형저축은행)	25
〈丑	2-22	주요 경영지표(외국계 자본계열)	26
〈丑	3-1>	저축은행 관련 주요 정책	28



〈丑	3-2>	폐지 전 은행의 여신금지제도 주요 내용	30
〈丑	3-3>	예금보호한도 연혁	32
〈丑	3-4>	명칭변경 전 부실여신 및 충당금 추이	33
〈丑	3-5>	피인수된 8개 저축은행	36
〈丑	3-6>	부실저축은행 M&A 주요내용 비교	38
〈丑	3-7>	저축은행 PF대출 평가내용 및 등급기준	42
〈丑	3-8>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및 결과 추이(금액기준) ·····	42
〈丑	3-9>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변동현황	44
〈丑	3-10>	예금보험료 주요 평가요소	47
〈丑	3-11>	예금보험료 등급별 할인·할증폭	47
		, , _ , , , _ ,	48
〈丑	3-13>	› 저축은행 Peer그룹 편성 ···································	50
〈丑	3-14>	Peer Group별 주요 경영지표(요약)	50
〈丑	3-15	저축은행(전체) 당기순이익 추이	53
〈丑	3-16	서축은행 PF대출 KAMCO매각/환매 현황	54
〈丑	3-17>	저축은행 주요 영업규모 추이	56
〈丑	3-18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관련 일정	56
〈丑	3-19>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 컨소시움 구성 현황	57
〈丑	3-20>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쟁점 현황	57
〈丑	3-21>	P2P 대출업체 현황	58
〈丑	4-1 >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요건 비교	63
〈丑	4-2>	저축은행 영업구역별 현황	63
〈丑	4- 3>	금융사의 저축은행 인수 현황	67



그림목차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Chung Jae 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Korean savings banks have a 43-year history starting in 1972 and have an important position to represent very popular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blic. Through the historical streams of these banks, they had experienced very high growth periods for some periods and the suffering periods of restructuring due to the insolvency causes for the other periods.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problems incurred the direct harms to the customers and depositors transacting with these banks. The government officials injected the public funds for their bailout and were criticized for the wastes of people's tax which should be used for the national welfare.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trace out the insolvency causes of the Korean savings banks and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to prevent this crises. It is suggested that large scale savings banks should be transformed into local commercial banks and obtain the flexibility through M&A. Also this study recommends th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owning patterns of these banks and the internal



control and inspection function strengthening.

The current savings banks recently have finished the structural adjustment and have been stabilized with the recovery of the business environments. But they have the most importantly vital tasks to enlarge their abilities to deal with the changes of the external financial environments effectively. In the short run, they have the task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he reducement pressures of the limited maximum interests, the appearance of the specialized banks based on the Internet, and the extension of the P2P markets. The their long run tasks are to predict the future of the fintech industry development, and to prepare for the ever-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To cope actively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necessary policies are to strengthen the internal potential abilities and to enhance the suitable policy responsibility of the inspection institutions. The government should play roles to induce and guide these banks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not to repeat the phenomena to bog down to the insolvency bondages.

This study tries to focus on the government policies' directions and effectivenes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savings banking industry in Korea.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long run and stable development plans for the Korean savings banks.

Toward the other sides of this discussion, we have a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analyse the Korean savings banks using statistical and econometric methods. With the shortage of the statistical data, this study has many restraints not to compare these banks consistently due to many changes of this industry, the repetitive exits and entrances of these banks and th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between national and local savings banks.

KEY WORDS: 8.3 urgent economic measure 8.3긴급경제조치; Savings banks 저축은행; Insolvency 부실; Policy Changes 정책변화; Inspection 감독; Governance Structure 지배구조; Development Plans 발전방안; Fin-Tech 핀테크.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70년 초반까지 서민과 영세기업은 금융정책의 부재로 인해 고리의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1972년 8월 3일 '8.3긴급경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등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저축은행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탄생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해 영업환경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IMF 이후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실화 되었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환경에 처한 저축은행들의 부실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1년 초부터 삼화저축은행의 부실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모두 8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예금인출이 급증하는 뱅크런(bank-run)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축은행의 부실과 사회적 논란은 비단 2011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및 개인신용대출 부실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PF 부실사태 등 현재까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반복되었으며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면 과연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무엇이며, 부실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 제점은 무엇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 요인을 대별해 보면 금융시장의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위 축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구현과 고위험, 고수익군



인 부동산 PF에 대한 무리한 대출실행, 제한된 영업구역,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소유의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지 않은 대주주와 경 영진의 모럴헤저드는 물론 이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감사, 사외이사, 준법감시 인 등의 동조자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마비, 회계법인과의 결 탁을 통한 부실 및 공시누락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 출범당시 기관수가 350개 였으나 IMF 직후인 1997년 말 231개로 줄어들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말에는 107개로,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 2015년 6월말 현재는 79개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와 함께 자산의 규모도 2010년 86조원을 정점으로 부실 PF대출의 감축등의 영향으로 매년 축소되다가 2015년 6월말 4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반복적인 부실화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인식되어, 지역밀착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서 서민과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저축은행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PF대출의 문제점, 위험관리 실패, 계열화및 대형화의 결과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따른 피규제대상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이들에 대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규제기관의 정책과 실행의 결과를 참고하였고, 이러한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당국의 정책방향과 효과를 제시하려고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부실원인과 금융당국의 정책변화가 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저축은행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시간적 측면에서는 크게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래의 저축은행산업 변화 예상도고려해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저축은행 산업이 직면한 외부환경 변화가 향후 저축은행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 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당국의 각종 정책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어떤 효과를 유발할 것인지에 대 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국 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각종 통계자료, 관련기관의 발표자료 및 언론 보도자 료, 인터넷 검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발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 사례'가 비교적 최근의 정책 사례이며 정책의 잘못된 측면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한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의 검토보고서, 관련 법령, 국회 보고자료,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당시 사건의 경과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였다.

1.3 연구의 구성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저축은행의 태동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탄생배경과 관련법 제정 취지, 그리고 출범초기의 구조조정과 성장기로 시대적 구분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부실원인 및 결과를 고찰해 보았으며, 부실을 초래하게 된 정책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하여 조망해 보았다.

제4장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안을 조망해 보면서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관련 제도정비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 보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방향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업계의 향후 전망을 SWOT을 통해 전망해 보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저축은행(舊 상호신용금고)의 발전과정과 구조조정 경과

2.1 상호신용금고의 출범기

2.1.1 출범배경

2.1.1.1 사금융의 폐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1970년대 초반부터 금융의 국제화와 대형화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70년대 초반의금융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제한된 자금을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에 배분하였고,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는사실상 실종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난립된 사금융기관들은 서민경제에 심각한악영향을 끼치는 금융의 2중구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사금융시장이 번창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추세를 이어 갔으나 열악한 경제환경과 축적되지 못한 자본, 그리고 금융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저축율이 낮았고, 실질금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으로 인해 은행권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지 않은데 기인하였다.

은행권의 여신은 주로 담보위주로 취급되어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들은 담보부족 혹은 정책적 지원부족으로 이러한 사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사금융시장이 제도권금융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현실적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법적.제도적 규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금융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당시의 사금융은 상당히 복잡하여 융자대상별로 살펴보면 기업사금융, 유사서민금융, 농어촌 사금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융자방법 및 조직형태별로 분류하면 고리대금업자, 어음할인업자, 계, 서민금고, 사설 무진회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당시 이들의 대출금리는 약속어음, 연수표를 할인하는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월 5~15% 전화가입권을 담보로 하는 전화융자는 월 8~10%, 심지어 달러 사채라고 불리는 고금리채는 연 100%를 수취하는 등 이들의 고금리폐하는 막심한 수준이였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에서 이들 사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첫째, 제도금융권 밖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통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였으며 둘째, 출처 불명의 거액자 금이 사채와 증권시장을 넘나들면서 투기조장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셋째, 사채자금의 비합법적 축적과 거래의 익명성으로 거액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다섯번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여 섯번째, 서민가계에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쳤다.1)

<표 2-1>에서 8.3조치 이전 7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총자본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율을 살펴보면 1965년도에 두항목 공히 8%에 가깝던 것이 8.3조치 직전인 1972년도에는 1%대 초반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이 이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여 1965년 3%대 후반에서 1971년 9.4%로 증가하여 기업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1> 8.3조치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률과 금융비용 추이

(단위 : %)

구 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총자본이익률	7.90%	7.78%	6.77%	5.33%	3.67%	2.49%	1.04%
매출액 순이익률	7.90%	7.70%	6.74%	5.96%	4.31%	3.27%	1.30%
금융비용/매출액 비율	3.91%	5.66%	5.19%	5.90%	7.81%	9.15%	9.40%
순이익/매출액 비율	7.90%	7.70%	8.74%	5.96%	4.31%	3.27%	1.30%

자료 : 박용한,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2014, p.37.



¹⁾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20년사, 1993, p.75.

2.1.1.2 8.3 긴급경제조치

한편, 열악한 경제환경과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시장의 비대화는 경제적 왜곡을 보여주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1972년의 '8.3긴급경제조치'였다. 8.3조치로 인하여 사채시장의 윤곽이 많이 드러나고, 그것을 정부가 파악하게된 이상 사금융을 더 이상 제도권의 밖에 둔다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금융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탈세 및 부패의 온실이 되고, 또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비용을 물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72년 8월2일 자정을 기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를 발동하는데 이름하여 '8.3긴급경제조치'가 되었다.2)

그 주요내용을 보면

- * 모든 기업인은 8.2일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사채의 상환 중단. 3~9일까지 정부에 신고
- * 모든 사채는 8.3일부터 월리 1.3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
- * 금융기관은 2,000억원의 재원으로 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 80%를 연리 8%, 3년거치후 5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바꾸어 줄 것
- *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환율 400원선에서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물가상 승율 연간 3% 이내에서 조절, 1973년 예산 최대한 억제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연36.5%에서 연25%로 떨어뜨리며
- * 은행금리도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연16.8%에서 연12%로, 일반자금대 출의 금리도 연19%에서 연15.5%로, 연체대출금리 역시 연31.2%에서 연25% 로 내리도록 하였다.

정부가 사채 등 지하경제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8.3조치를 단행한 것은 다수



²⁾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8.3 긴급경제조치, 2010, pp.381-382.

의 선량한 사채권자 즉 국민의 희생 위에서 기업의 안정과 성장의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라 보는 시각과 국민경제의 모순이 심화되자 국가권력이 이자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속에 8.3조치와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당시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의 악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활동및 고용증대를 촉진하고 사채조정 및 금리인하를 통하여 인플레의 악순환에서 벗어 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8.3조치가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기능대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 선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리사채 이용의 폐단을 없애고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보하여 건전한 기업형성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3)

2.1.2 상호신용금고의 탄생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8월 2일 법률 제2333호로 공포되었다.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달 8월11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유사 서민금융업체는 동법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90일 이내에 상호신용금고 설립인가 신청을하도록 하였다. <표 2-2>를 보면, 같은 해 8월 30일까지 본점 기준으로 624개업체가 신고를 하였으며, 10월 30일 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364개가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부터 단계별로 인가하여 12월 20일 1차 영업인가 269개, 12월 30일 2차 영업인가 30개, 그리고 73년 3월 5일에 51개 업체가 추가로 인가되어 본점기준으로 총350개(지점 167개)가 영업인가를받게 되었다.

<표 2-2> 유사 서민금융업체 신고 및 인가 현황

구 분	업 체 별	본 점	지 점	합 계
72.8.30	신고업체	624	314	938
72.10.30	인가신청업체	364	171	535
73.3.5	금고인가업체	350	167	517

자료 : 대한금융단(1978), 한국금융30년사, p.838.



³⁾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30년사, 1978, p.838.

<표 2-3>에서 이들의 지역별 인가현황을 살펴보면

무진업이 크게 성행한 지역이었던 서울과 경북지역의 인가업체가 다수였는 바, 서울이 전업 36개, 할부 43개 총 7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지역이 전업 49개, 할부 5개 총 54개였으며 나머지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다.

<표 2-3> 지역별 인가현황

7 11	본 점				장L -미		
구분	전업	할부	소계	전업	할부	소계	합 계
서울	36	43	79	13	3	16	95
부산	30	4	34	7		7	41
경기	22	9	31	30		30	61
강원	25	5	30	22		22	52
충북	14	1	15	4		4	19
충남	24	4	28	23		23	51
전북	15	1	16	18	,	18	34
전남	17	5	22	6	///.	6	28
경북	49	5	54	26		26	80
경남	23	4	27	11	15	11	38
제주	13	15	14	4	5	4	18
합계	268	82	350	164	3	167	517

자료 : 대한금융단(1978) 한국금융 30년사, p.838.

한편, 출범이후 신용금고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1973년 9월17일 '상호신용금고 협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초기의 역할과 기능은 신용금고 종사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등을 위한 연수기능과 신용금고에 대한 부실 의 파악과 민원처리 등으로 단순하였다. 이후 상호신용금고협회는 1975년 8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개편되었으며, 정부는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재무부장관의 감독권 중 일부를 이양하여 연합회를 '상호신용보장기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1979년 11월 5일 행정지시를 통해 개별 신용금고에 대 한 검사권을 부여 하였다. 한편, 출범 이듬해인 197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앞으로 상호신용금고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정책지도 방향을 국민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기관과의 조화에 주력하여 독자적인 업무영역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 는 일본에 있어 1951년 '상호은행법'에 의하여 무진회사가 공금융기관으로 전환 된 후 업적의 비약적 확대 과정에서 여·수신면에서의 심한 상업은행화 경향으로



금융제도와 운영상 많은 난제를 제기해 왔던 역사적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출범 이후 신용금고업계가 상당부분 정비되고 할부전업금고의 3사 합병을 통해 부실 신용금고 파동이 진정되어 나가자, 1976년 1월12일부터 같은 해 6월3일까지 건전신용금고 육성을 목표로 신용금고연합회가 주관하여 75개 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경영실태조사는 56개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1976년 1월12일부터 4월10일까지 9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2차 경영실태조사는 1차 조사 때 신청을 하고 누락된 신용금고 19개에 대하여 1976년 4월19일부터 45일간 실시하였다. 이후 제3차에서 6차까지의 경영실태조사는 60개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1976년 6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재차 실시하였다.

<표 2-4>는 당시의 경영실태조사 판정의 세부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기준에 의거하여 경영실태조사를 마친 정부는 C급 판정을 받은 8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B급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C급판정을 받았으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정을 하였다.4)

<표 2-4> 경영실태조사 등급기준

구 분	등급기준
	경영이 건전한 금고로서
시 0 버그 미	1) 결손이 없으며
신용부금 및	2) 업무신장이 현저하여 계약유지율이 양호하고
자금지원대상	3) 차입금의 규모가 법정한도 이내, 차입금의 처리가 적법하며
(A)	4) 수입계금의 규모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5) 법 및 지시사항의 위반이 없는 금고
	경영이 정상적인 금고로서
자금지원대상	1) 결손액이 불입자본금의 50% 이내이고 결손 차감 순자본금이
(B)	법정자본금 이상으로써
	2) 기타 요건은 A급 금고기준 2항 내지 5항에 해당하는 금고
(C)	A급과 B급에서 제외된 금고

자료 : 대한금융단(1978) 한국금융 30년사, p.842



⁴⁾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30년사, 1978, p.838.

<표 2-5>에서 경영실태를 마친 결과를 보면, A급 54개, B급 28개, C급 32개이었으며 B,C등급에 대해서도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980년말에는 모두 144개 신용금고가 A급 판정을 받게되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은 A급은 신용부금업무를 허용하고, 한일은행을 통해6개월거치 2년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자금 융자를실시하였고, B급은 신용부금업무는 허용하지 않으나 지원자금을 융자하였으며, C급은 증자를 유도하고 특별지도를 강화하되, 그래도 경영정성화가 어렵다고판단된 경우에는 정비대상이 되었다. 1977년 들어 B급 이상의 신용금고에 대해서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자금을 융자하여, 인근 시장내의 영세 상공인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지원방안의 실행 결과로 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이 유도되어 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A급과 B급 신용금고에 대한 한일은행과 국민은행의 지원내역을 보면, 1976년 부터 1981년까지 한일은행이 84건에 35억3천4백만원, 국민은행이 568건에 287 억2천만원을 지원하였다.5)

	< 丑 2-5>	지원자금의	은행별	융자실행	현황
--	----------	-------	-----	------	----

구 분	한일은행 지원 1)		국민은행	지원 2)	합	계	비고
7 T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끄
1976년	37	1,587	1945	16	37	1,587	
1977년	29	1,108	y Ot (-#	29	1,108	
1978년	9	415	149	<i>7,</i> 178	158	7,591	
1979년	4	195	141	6,088	145	6,283	
1980년	5	229	126	7,597	131	7,826	
1981년			152	7,859	152	7,859	
합 계	84	3,534	568	28,720	652	32,254	

주) : 1) 금고당 5천만원 이내. 6개월 거치 2년6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 및 일반대출 금 리(연 14.5%) 보다 저리인 12.5%를 적용함

2) 6개월거치 1년6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14%의 금리를 적용함자료 :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p.103.



⁵⁾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20년사, 1993, p.103.

2.1.3 출범초기의 구조조정

< 포 2-6>에서 보면 1972년 350개로 출범했던 신용금고는 이후 계속된 정비 노력으로 1973년 60개, 1974년 55개, 1975년 24개 등 1975년까지 139개가 인가 취소 혹은 합병으로 인하여 출범 3년만인 1975년 말에는 223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표 2-6> 상호신용금고 출범 이후 정비현황

(단위:개)

지역	인가금고	인가취소					
\\ \frac{1}{3}	친/[급포	1973년	1974년	1975년			
서울	79	4	9	2			
부산	34	1	1	1			
경기	31	5	2	2			
강원	30	15	6	3			
충북	15	6	3	1			
충남	28	4	11, 7	2			
전북	16	2	5	2			
전남	22	4	3	3			
경북	54	10	11	3			
경남	27	5	4	3			
제주	14	4	4	2			
합계	350	60	55	24			

자료 :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p.85.

아래의 <표 2-7>은 민생계열금고의 정상화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비과정을 통해 13개의 민생계열금고가 정상화 되었는데, 민생계열금고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무진회사가 신용금고로 전환된 것이었다. 당시의 무진업체 전부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인가요건에 크게 미달했던 민생금고를 1972년 각 지역별로 독립된 13개 금고 57개 지점으로 인가했으나, 이들 민생계열금고들은 위장출자, 급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한데다 여신 취급을 기피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제1차 금고검사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제2차 검사에서도 부실요인은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가진 13개 민생계열금고가 동시에 퇴출될 경우 거래자가 입을 막대한 피해와 신용금고업계에 대한 공신력 실추를 감안하여 이들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을 은행에서 인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국민은행



과 지역내 지방은행이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생계열금고 는 정상화 되었으나 이후 7개 신용금고가 개인주주로 바뀌었다.6)

<표 2-7> 민생계열금고의 정상화 현황

(단위:개)

구 분		정상화 이후 금고			92년 변천상황
금고명	지점	금고명	인수년월일	인수주주	92년 변선경왕
서울민생	7	서울 부국금고	74.8.31	국민은행	
인천민생	1	인천 경은금고	74.12.20	경기은행	
충남민생	5	대전 충은금고	74.12.20	충청은행	현재 개인주주
전북민생	4	전북 전일금고	74.12.17	전북은행	현재 개인주주
전남민생	5	광주 광주금고	74.12.12	광주은행	현재 개인주주
마산민생	4	경남 경은금고	74.12.18	경남은행	
제주민생	1	제주 제은금고	74.11.1	제주은행	현재 개인주주
충북민생	2	충북 충북금고	76.5.7	충북은행	현재 개인주주
강원민생	7	강원 강원금고	77.8.12	강원은행	현재 개인주주
부산민생	4	부산 부은금고	73.1.1	부산은행	
대구민생	10	대구 경북금고	74.9.24	대구은행	현재 개인주주
경기민생	6	경기 대양금고	74.10.15	지역주주	
진주민생	1	2	76.11.11	경남은행	(경은금고 지점)
13개	57	12개			

자료 :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p.86.

2.2 상호신용금고의 성장기

1970년대 말에 이르자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 주도의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1978년 10월에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계속되자, 정부는 1979년 4월에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1980년 들어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경제가 198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3저호황'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제

1945



⁶⁾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20년사, 1993, p.86.

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두가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먼저 금융자율화가 추진되어 1980년 12월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화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금리자유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과 아울러 신상품 개발, 금융기관 진입제한의 완화 등 이었는데 특히, 금리자유화 추진정책은 이후 신용금고의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표 2-8>과 같다.

<표 2-8> 금리자유화 4단계 추진 현황

	구 분		금리자유화 추진내용		
			⊠ 1991. 11. 21		
	수	신	·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거액환매체(RP) 및 거액 상업 어음, 무역어음 일반매출, 3년만기 정기예금 신설		
1단계			· 제2금융권 : 투금사의 거액 기업어음(CP), 3년이상 예금 등 상호신용금고 2년이상 예금		
1인계	여	신	· 은행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한은재할인 대상어음 제외), 연체대출		
			· 제2금융권 : 상업어음할인(신탁, 상호신용금고, 보험) 투금사의 CP할인 및 무역어음 할인		
	채	권	• 2년이상 회사채		
			⊠ 1993 11. 1		
			· 은행 : 정기예금(2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3년이상) 등		
الداعا			· 제2금융권 : 예금(2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3년이상) 등		
2단계			· 상호신용금고 : 예금(1년이상), 적금(2년이상) 등		
	여	신	· 은행, 제2금융권 전 여신(재정 및 한은 지원대상 제외)		
			· 금융채와 국공채, 2년미만 회사채		
			⊠ 1994. 7. 18 일부 시행		
	수	신	· CD, RP, CP의 최저 발행기간(91일에서 60일로 단축) 은행 표지어음 발행 허용(94.12.1 일부 시행)		
			·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 6M이상 1년미만 예금, 1년이상 2년미만 적금		
3단계			단기 시장성상품 자유화 폭 확대(최단만기 단축및 최저 발행금리 인하)		
			· 6M미만 예금(1년미만 적금등) 3M이상 예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단기 시장성상품 자유화 폭 확대(최저 발행액 인하)		
	여	신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자금 금리(95.11.20 완결)		



	구 분	금리자유화 추진내용			
		⊠ 1997. 7. 7			
	수 신	·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3M미만, MMDA), 기업자유예금 (3M미만, MMDA)			
		· 발행어음(1M미만), 기업어음(거액 CP는 기 자유화)			
4 1 11	종 금	· 신탁형 증권저축			
4단계	투 신	· 신보통부금예수금			
	상호신용금고	·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3M미만)			
	신협, 새마을금고	· 단기시장성상품(CD, RP, CP 등의 만기와 최저금액 제한 폐지)			
	상호금융	· 투신사의 중도환매수수료 자유화			
		· 기한부예금의 만기후 이율			

자료 : 박용한(2014)7)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1993년7월 단행된 금융거래의 실명화 조치이며, 이후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하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신용금고나 단자사를 설립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당시의 신용금고업계 현황을 보면 신용금고 선별 육성책에 따라 자본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부실요인이 감소된데다 은행보다 높은 여·수신금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 정부는 신용금고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1979년 8월31일 '신용금고 활성화 시책'을 발표 하였다.

한편, 신용금고업계에는 1979년 8월에 이어 1983년 4월부터 다시 업무활성화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주요내용 중 하나가 신용금고의 지역별 기준자본금을 신규인가 납입자본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배로 인상한 것이었다.8)



⁷⁾ 박용한, 한국의 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2014, p.65.

⁸⁾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20년사, 1993, p.228.

<표 2-9> 상호신용금고 자본금 제도의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법정 최소자본금 (1972년)	기준자본금 (1979년)	기준자본금 (1982년)
특별시	50		50
직할시	0.5	5	30
30만명이상 도시	0.2	3	20
기타 도시	0.3	3	10
기타 지역	0.15	1	5
할부전업금고	0.15	1	

자료 :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p.228.

다른 한편으로는, 1979년 신용금고 활성화 시책의 시행으로 신용금고의 점포수가 늘어나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수의 신용금고가 부실화 되었다. <표 2-10>에서 보면, 1983년도에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1983년 6월에 경남금고를 시작으로 하여 4개의 신용금고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어서 9월 영동개발 사건과 10월 대구의 광명그룹 부도로 이들이 소유한 화신금고, 광명금고가 부도처리 되면서 1985년까지 19개의 신용금고가 부실화되어 그여파로 우리나라 금융이 전반적으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표 2-10> 상호신용금고 부실사고 및 사후처리 현황(1983년~1997년)

(단위: 억원)

순번	금고명	소재지	사고일자	사고금액	사후처리
1	경남	경남	1983.6.8	31	파산
2	삼영	충남	1983.6.21	15	파산
3	금정	경기	1983.6.23	8	파산
4	창녕	경남	1983.6.24	1	자체정상화
5	태광	경남	1983.8.3	28	파산
6	남도	부산	1983.8.3	124	파산
7	우신	서울	1983.8.3	20	은행인수(국민은행)
8	조흥	부산	1983.8.13	154	자체정상화
9	화신	서울	1983.10.6	50	은행인수(조흥은행)
10	한일	서울	1983.10.6	52	계약이전
11	신한	부산	1983.10.31	26	자체정상화
12	광명	대구	1983.11.4	61	파산



순번	금고명	소재지	사고일자	사고금액	사후처리
13	영남	대구	1983.11.4	27	은행인수(국민은행)
14	대구제일	대구	1983.12.7	9	은행인수(국민은행)
15	경상	경북	1983.12.14	3	자체정상화
16	홍익	경북	1984.2.16	17	계약이전
17	신흥	전남	1984.2.29	31	계약이전
18	중앙	부산	1984.7.11	76	계약이전
19	국민	대구	1985.3.11	89	계약이전
20	대주	서울	1987.8.7	127	계약이전
21	영신	서울	1987.9.21	657	계약이전
22	장일	서울	1988.2.12	314	계약이전
23	송탄	경기	1992.10.14	841	계약이전
24	경기	경기	1992.10.14	878	계약이전
25	국보	충남	1994.3.3	927	계약이전
26	제일	충남	1994.3.3	481	계약이전
27	흥업	충북	1994.5.21	145	계약이전
28	동보	충남	1994.11.25	404	자체정상화
29	충북	충북	1995.7.7	621	계약이전
30	동양	청주	1995.9.30	391	주식양도
31	동양	광주 (195.10.19	578	자체정상화
32	조흥	부산	1995.12.7	127	계약이전
33	중앙	대전	1996.7.26	964	자체정상화
34	신대한	서울	1996.9.9	643	자체정상화
35	한보	경기	1997.1.24	436	계약이전
36	오성	경기	1997.6.16	505	계약이전
37	시산	서울	1997.9.23	344	파산
38	동화	경북	1997.10.13	219	파산

자료 : 예금보험공사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간에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으며, 신용금고는 서민금융기관 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대 상으로 한 여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 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강



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자, 신용금고 역시 커다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9

2.3 구조조정 추진경과

2.3.1 2011년 이전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직후인 1973년~1975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000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8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년에 이루어졌다. 1973년~1975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감독당국이 가능한 많은 사금융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先인가 後정비 원칙'에 따라 설립을 인가한 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환위기이후와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동안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어 정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민금융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3.2 2011년 이후

2011년 이후의 구조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어 서울의 대영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되었으며, 제3자에게 계약이전된 저축은행이 서울의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하여 16개사, 가교저축은행(Bad Bank)에 계약이전후 제3자에게 매각된 저축은행이 13개사로서 2014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 이들중 일부는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되고 일부는 대부업체에 인수되어 상호저축은행 재편의 윤곽이 대강 드러나게 되었다.

<표 2-11>에서 보듯이 1999년 저축은행이 호황기를 구가할 때 237개 이었던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 부산발 저축은행 사태가 발발된 2011년에는 98 개로 줄어들게 되고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2014년도 말에는 80개, 구조 조정이 완료단계에 이른 2015년 6월말 현재에는 79개의 저축은행이 6개 권역에 서 영업중에 있다.



⁹⁾ 박용한,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2014, p.73.

<표 2-11> 상호저축은행 수 변동 추이

(단위:개)

구 분	199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말	2015.3월	2015.6월
개수	237	105	98	85	80	79	79
특이사항	호황기	조정기	사태발생	구조조정중	구조마무리	조정완료	안정화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2.4 최근의 구조조정 현황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업계도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다시 일부 저축은행이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전에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29개에 달했지만 대형저축은행들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10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다시 덩치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다.

<표 2-12>에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의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과, <표 2-13>에서는 부실저축은행 인수 이후 재편 되어지는 저축은행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예에서 보듯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계열사를 합치면 전산관리, 감사 등에서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있고 또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이런 매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이같은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관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익다각화와 리스크관리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경쟁이 날로 심해져 가고, 금리는 갈수록 하락하는 등 영업환경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고금리대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는 대형화된 저축은행들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4.1 부실저축은행 정리현황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주도



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가교저축은행을 통한 금융지주계열의 저축은행 인수는 앞으로 저축은행산업의 시장판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저축은행 정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2011년 이후)

◇ 총 30개사 : 제3자 계약이전 16개, Bad Bank 이전후 3자 매각 13개, 자체정상화 1개

저축은행명	영업 정지일	정리 방식	계약 이전일	최종인수자
(서울)삼화	11.1.14	제3자 계약이전	11.3.16	우리금융지주
(부산)부산	11.2.17	가교(예솔)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1.11.23	IBK
(부산)부산2 (서울)중앙부산 (강원)도민	11.2.19 112.19 11.2.23	제3자 계약이전	11.8.26	대신증권
(대전)대전	11.2.17	가교(예나래)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1.9.5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
(전북)전주 (전남)보해	11.2.19 11.2.19	가교(예쓰)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1.9.5	삼호산업
(울산)경은	11.8.5	가교(예솔)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1.10.19	IBK
(서울)대영	11.9.18	자체정상화		(현대증권인수)
(경기)토마토	11.9.18	제3자 계약이전	12.1.2	신한금융지주
(서울)프라임 (부산)파랑새	11.9.18 11.9.18	제3자 계약이전	12.1.2	BNK금융지주
(서울)제일	11.9.18	제3자 계약이전	12.1.13	KB금융지주
(서울)제일2 (인천)에이스	11.9.18 11.9.18	제3자 계약이전	12.2.8	하나금융지주
(서울)솔로몬	12.5.6	제3자 계약이전	12.9.5	우리금융저축은행
(서울)한국	12.5.6	제3자 계약이전	12.9.5	하나금융지주
(제주)미래	12.5.6	제3자 계약이전	12.10.5	J트러스트
(충남)한주	12.5.6	가교(예나래)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2.9.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부산)토마토2	12.10.19	가교(예솔)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2.10.19	IBK
(서울)진흥	12.11.16	가교(예한별)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2.11.16	신한금융지주
(경기)경기	12.12.28	가교(예한별)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2.12.28	KB금융지주
(서울)더불유	12.12.28	가교(예성)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2.12.28	한국투자금융지주
(서울)서울	13.2.15	가교(예주)저축은행 계약인수후 제3자 매각	13.2.1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부산)영남	13.2.15	가교(예솔)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3.2.15	IBK
(인천)신라	13.4.12	가교(예신)저축은행 계약이전후 제3자 매각	13.4.12	웰컴크레디트라인
(전북)스마일	13.11.1	제3자 계약이전	13.11.1	오릭스저축은행
(전북)한울	13.12.27	제3자 계약이전	13.12.27	페퍼저축은행
(부산)해솔	14.5.2	제3자 계약이전	14.5.2	예신저축은행(웰컴)
3				

자료 : 금융위원회



2.4.2 재편현황

부실저축은행 인수 주체도 상당히 다변화 되었으며, 은행계인 금융지주가 15 곳, 증권계가 5곳, 외국계자본이 3곳, 일반기업이 1곳, 대부업체가 5곳 등 그 주체가 다양하며, 향후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3> 부실저축은행 인수현황

구 분	인수주체(인수대상)	현재 상호
	우리금융지주(2곳)	NH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2곳)	신한저축은행
0 체계(1특고)	KB금융지주(2곳)	KB저축은행
은행계(15곳)	하나금융지주(3곳)	하나저축은행
	BNK금융지주(2곳)	BNK저축은행
	IBK(4곳)	IBK저축은행
	대신증권(3곳)	대신저축은행
증권계(5곳)	현대증권(1곳)	현대저축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1곳)	한국투자저축은행
	J트러스터(1곳)	친애저축은행
외국계(3곳)	오릭스(1곳)	OSB저축은행
	페퍼(1곳)	페퍼저축은행
기업계(1곳)	삼호산업(1곳)	SH삼호저축은행
대부업계(5곳)	웰컴(2곳)	웰컴저축은행
네구함세(3六)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3곳)	OK저축은행

자료 : 금융위원회

아울러 <표 2-14>에서 보듯이, 과거 저축은행 삼국지의 주역이었던 일본계와 토종 대형, 토종 중·소형저축은행에다가 금융지주계열 및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이 가세하게 됨으로써, 향후 시장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업계 모 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으나, 비전이나 성장전략에 대한 차별화된 밑그림을 그리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2-14> 저축은행 시장구도와 특징

- J		E =)		
구 분	저축은행명	특 징		
	SBI저축은행			
	JT저축은행			
일본계자금	JT친애저축은행	저금리 조달 고금리 신용대출		
	OSB저축은행	고급니 건둥네물		
	OK저축은행			
	H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고그리 그리 이사의 제국기표		
토종대형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중금리 조달, 다양한 대출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푸른저축은행	エニョ イエ 1 8		
	한국투자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리선·비 기계된 그수세		
토종 중.소형 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지역내 관계형 금융에 조직역량 집중		
	한성저축은행	ユーコッ 日 0		

자료 : 이투데이(2014. 11. 24)

한편, 상호저축은행간의 합병도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추세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SBI, HK, OK저축은행으로, 흩어져 있는 계열사를 합치면 전산, 감사업무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영업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15>에서와 같다.

<표 2-15> 저축은행 합병현황(2013년 ~ 2015년)

피합병회사	합병회사	합병후 회사	합병일	현재 상호
(경기)신한	(서울)예한별	(서울)예한별	2013.4.1	(서울)신한
(경기)예한솔	(서울)KB	(서울)KB	2013.12.27	(서울)KB
(전북)예쓰	삼호산업	(전북)예쓰	2014.3.5	(전북)삼호
(서울)예신	웰컴크레딧	(서울)예신	2014.4.30	(서울)웰컴
(서울)예성	(경기)한국투자	(경기)한국투자	2014.9.2	(경기)한국투자
(부산)부산HK	(서울)HK	(서울)HK	2014.10.1	(서울)HK
SBI 2,3,4	(서울)SBI	(서울)SBI	2014.10.17	(서울)SBI
(전북)오케이2	(서울)오케이	(서울)오케이	2014.10.31	(서울)오케이
(충남)서일	(서울)웰컴	(서울)웰컴	2014.11.1	(서울)웰컴
(부산)흥국	(서울)O2	M&A	2015.1.15	(서울)O2

자료 : 금융위원회



2.4.3 규모별, 특성별 저축은행 구조 전망

이렇게 재편된 저축은행을 규모별, 소유·지배구조별로 구분지어 보면 국내자 본계열과 외국계자본계열로 대별되고, 그 중 국내자본계열은 금융지주 계열, 대 부업체인수 저축은행, 토종(대형, 중형, 소형) 저축은행으로 나누어지며 그 구분 된 저축은행 현황은 <표 2-16> ~ <표 2-22>과 같다.

2.4.3.1 국내자본계열

2.4.3.1.1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표 2-16>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하나	9,817	1,781	134	108	1.05%	6.47%	15.56%	12.23%
NH	7,901	1,284	96	74	0.98%	6.11%	19.79%	10.56%
KB	7,579	1,505	20	-13	-0.16%	-0.84%	18.25%	14.94%
신한	7,590	1,047	144	138	1.83%	14.41%	17.40%	7.74%
BNK	7,562	1,019	-64	-65	-0.92%	-6.36%	10.75%	6.50%
IBK	5,605	705	166	163	3.27%	30.48%	17.41%	12.56%
평균	7,676	1,224	83	68		7/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2.4.3.1.2 대부업체 인수 저축은행

<표 2-17>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OK	16,160	1,710	-158	-160	-1.65%	-9.38%	14.91%	6.86%
웰컴	11,410	710	187	157	0.24%	1.92%	15.64%	7.98%
JT친애	15,434	745	11	14	0.11%	1.64%	7.18%	9.94%
평균	13,785	1,210	15	-2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주) IBK저축은행은 편의상 금융지주계열로 간주하여 작성함.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주 에서 제외하였음

2.4.3.1.3 토종 대형저축은행(총자산 1조원 이상)

<표 2-18>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HK	20,543	2,332	744	573	2.67%	31.08%	13.19%	11.00%
한국투자	16,346	2,893	431	347	2.42%	13.97%	19.17%	5.46%
모아	14,537	1,009	236	174	1.20%	18.68%	10.15%	13.23%
동부	10,868	1,398	52	27	0.24%	1.92%	15.64%	7.98%
현대	11,501	1,383	351	353	3.68%	34.29%	15.41%	9.23%
평균	14,759	1,803	363	295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2.4.3.1.4 토종 중대형저축은행(자산규모 4천억이상 ~ 1조 미만)

<표 2-19>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억원)

					- W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신안	9,111	859	78	61	0.61%	7.07%	10.91%	7.71%
푸른	8,782	1,811	307	254	2.79%	15.06%	22.05%	22.28%
대신	8,447	1,021	19	23	0.28%	1.98%	12.07%	13.20%
아주	7,745	478	83	76	1.07%	15.90%	9.87%	12.53%
키움	6,701	700	130	110	1.73%	18.74%	12.56%	9.90%
고려	5,256	1,108	220	252	5.27%	26.97%	19.47%	15.36%
한화	4,822	566	184	184	3.22%	36.64%	14.96%	5.99%
세람	4,493	305	72	54	1.09%	17.64%	8.41%	15.37%
인성	4,772	326	70	69	1.50%	21.20%	11.11%	12.82%
더케이	4,963	496	29	23	0.50%	4.81%	12.82%	11.22%
공평	4,318	-82	-215	-209	-4.49%	-164.62%	-2.60%	18.90%
참	4,673	396	152	113	2.56%	39.45%	11.44%	11.01%
남양	4,323	777	106	80	1.83%	11.56%	18.62%	2.81%
금화	4,458	287	92	69	1.75%	23.98%	8.74%	10.61%
스마트	4,102	303	138	133	3.48%	43.89%	10,65%	10.42%
예가람	4,352	694	179	140	3.71%	22.53%	19.73%	9.95%
평균	5,707	628	103	90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2.4.3.1.5 토종 중소형저축은행(자산규모 2천억이상 ~ 4천억 미만)

<표 2-20>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삼성	3,949	609	64	45	1.13%	8.02%	19.71%	13.88%
안양	3,870	314	77	53	1.37%	16.80%	11.19%	7.52%
세종	3,937	277	110	106	3.08%	38.37%	10.37%	9.52%
엠에스	3,602	234	25	29	0.81%	13.09%	9.88%	3.91%
민국	3,506	500	57	51	1.46%	11.27%	17.45%	18.10%
진주	3,501	512	61	50	1.51%	9.50%	20.25%	9.75%
한신	3,256	1,733	6	-9	-0.26%	-0.52%	148.78%	45.89%
드림	3,204	355	55	45	1.43%	15.55%	13.54%	7.72%
우리	3,045	-469	8	0	0.00%	0.00%	-31.98%	21.52%
스카이	3,259	444	47	34	1.12%	7.66%	15.85%	18.96%
부림	2,962	698	76	63	2.15%	8.82%	29.24%	21.08%
조은	2,406	149	13	12	0.64%	8.26%	10.44%	17.54%
융창	2,612	192	22	19	0.77%	11.25%	10.39%	16.89%
인천	2,499	155	31	23	0.93%	17.42%	8.68%	24.15%
삼정	2,518	370	37	29	1.17%	8.28%	19.90%	18.41%
유니온	2,431	123	-11	-10	-0.41%	-8.13%	8.02%	21.27%
한성	2,292	394	97	77	3.50%	19.60%	25.36%	6.92%
동양	2,180	67	3	1945	0.31%	11.87%	8.14%	24.88%
오투	2,077	147	30	29	1.64%	20.15%	9.31%	7.05%
안국	2,235	260	17	12	0.54%	4.61%	15.91%	24.52%
평균	3,123	372	43	35				
_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2.4.3.1.6 토종 소형저축은행(자산규모 1천억대)

<표 2-21>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동원제일	1,937	137	26	34	1.98%	34.77%	14.01%	1.84%
조흥	1,884	246	31	26	1.55%	9.98%	16.98%	3.69%
국제	1,631	209	45	40	2.46%	18.70%	19.88%	13.52%
DH ^{₹1)}	1,577	170	47	47	3.09%	38.69%	14.05%	14.28%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솔브레인	1,642	182	28	22	1.33%	13.40%	15.42%	8.70%
평택	1,553	234	38	25	1.60%	11.70%	20.43%	27.07%
청주	1,525	256	63	57	3.75%	26.25%	24.74%	13.76%
대명	1,570	228	33	27	1.86%	11.99%	23.72%	5.04%
아산	1,493	154	21	16	1.10%	11.96%	13.85%	12.83%
대백	1,426	131	20	19	1.26%	14.38%	14.79%	7.73%
더블	1,477	92	23	7	0.49%	7.51%	8.78%	7.68%
대한	1,369	137	35	35	2.66%	34.35%	14.08%	10.66%
삼호	1,557	133	4	5	0.28%	7.26%	15.87%	34.23%
스타	1,187	491	19	17	1.36%	3.26%	60.04%	8.01%
오성	1,067	189	7	6	0.67%	3.63%	22.24%	1.32%
S&T	1,110	258	20	16	1.42%	6.11%	30.68%	6.73%
평균	1,334	180	26	22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주1) 화승저축은행은 2015.10.1자로 DH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2.4.3.2 외국계 자본계열

<표 2-22> 주요 경영지표('1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은행명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ROE	BIS비율	고정이하 비율
SBI	39,001	3,750	557	232	0.75%	8.66%	11.46%	27.67%
OSB	11,698	1,009	120	102	0.95%	12.73%	10.11%	4.89%
JT	3,911	728	201	166	4.53%	25.49%	49.07%	8.28%
페퍼	4,580	169	-92	-87	-2.90%	-63.97%	7.01%	2.83%
평균	11,838	1,131	157	83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

주) 2015.7.6자로 (舊)친애저축은행은 JT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3. 정부의 정책변화와 저축은행의 부실원인 및 결과와 최근 동향

3.1 부실발생 과정과 시대적 구분

본 장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정책적인 변화와 연관지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97년 이전 저축은행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힙입어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물론 출범 초기와 성장기 말기에 약간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많은 저축은행이 우량고객의 이탈로 부실화 되어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새로운 수익모델로 취급했던 소액신용대출이 2003년~2004년에 부실화되어 저축은행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활황, 각종 규제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부동산 PF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자산이 급증하였고, 2006년 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이 다소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동안 급증하였던 부동산 PF대출이 급속히 부실화되어, 그 여파로 2011년에만도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바 있다.

저축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 및 정책변화,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저축은행은 설립및 정착기(설립이후~1979년), 성장기(1980년~1996년),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 시기(1997년~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실심화 시기(2005년~2010년), 구조조정 시기(2011년~현재)의 5단계로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다.10)



¹⁰⁾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00-132.

3.2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의 문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이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던 상태에서 소액신용대출 부실, 가계신용위기 등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취한 전략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였다. 특히, M&A를 통하여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에 넘기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감상조는 '건전성 감독의 강화 및 영업행위 규제의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유지 되었지만,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참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11)

한편 김동열, 한상범은 저축은행 관련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저축은행 경영 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12)

저축은행 관련 주요 정책은 <표 3-1>과 같다.

<표 3-1> 저축은행 관련 주요 정책

시 기	주요 정책	주요 내용
1972.8	사금융양성 3법 제정	*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1993.8	금융실명제 실시	*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
1998.1	은행 여신금지업종 폐지	*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병행 폐지
2000.4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 대규모 금고와 소규모 지역밀착형 금고로 차별화된 발전 지원 * 영업제한 대폭 완화 : 영업구역외 거주 고객과의여.수신 거래제한 폐지,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유가증권 취득한도 확대 *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지방은행 전환요건 충족 우량금고에 대하여 희망시 전환 허용 검토
2000.12	상호신용금고업계 안정화 대책	* 금고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 자산관리 공사 부실채권 매입 확대 등 * 금고 대형화를 통한 업계 공신력 제고 : 부실금 고의 합병 적극 유도

¹¹⁾ 감상조,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원인.대책, 한국금융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 p.54.



¹²⁾ 김동열, 한상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와 낙하산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 논총 제50권 제1호, 2011, p.195.

시기	주요 정책	주요 내용
2001.1	예금보호한도 상향	*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2001.4	감독규정 개정	* 금고간 자율합병 촉진을 위해 타 금고 주식취득 제한 완화 등
2002.3	상호신용금고 명칭변경	*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2002.12	건전성 감독 강화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확대 (50%에서 100%로)
2005.12	감독규정 개정	*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M&A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저축은행 주식 취득요건을 BIS 자기자본비율 7%로 완화
200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자기자본 20%로 상향 *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허용 * M&A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액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 허용
2008.9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부실저축은행 인수 저축은행에 대하여 최대 5개 지점 설치 허용 * 자기자본 특례 인정 범위 확대
2008.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저축은행' 명칭 사용 허용 * 자기자본 정의 확대를 통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 신용공여 한도 확대 * 업무범위 확대 : 편드 판매, 신탁업 외
2010.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 시행	*합병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강화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신설 및 개인 대상신용공여 한도 확대 *PF대출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대출 취급 가능
2011.3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	*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우량 저축은행(8.8클럽) 여신한도 우대 폐지 *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시제도 강화, 과도한 후순위 채 발행 억제 *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 도입, 경영 관여 대주주의 등기 임원화 유도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감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등
2013.9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 * 서민금융 공급기능 제고
2015.5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등 *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 방지

자료 : 금융위원회



3.3 저축은행 부실원인

본 절에서는, 당국의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이 왜 추진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어떤 영향과 부작용을 낳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3.3.1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제한 폐지

3.3.1.1 제도추진배경

여신금지제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거하여 1974년부터 실시되어온 규제로서 골프장, 콘도업, 주점업, 대형(100평 이상) 식당업, 부동산업, 사우나 등 과소비. 향락업종으로 분류된 업종들을 은행의 여신대상에서 제외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가 진전됨에 따라은행의 자금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여신금지제도를 1998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여신운용을 허용하였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외환위기 이후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사치.향락성 소비도 크게 위축되어 있어, 여신금지부문을 폐지하더라도 은행의 대출이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이는 그 당시에는 개방경제 추세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 3-2>와 같이 담보취득이 제한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제한조치도 삭제되었다.

<표 3-2> 폐지 전 은행의 여신금지제도 주요 내용

구 분	금지 내용
여신금지 부문	① 토지의 매입 단 서민주택 건설용, 공장건설용, 실수요자 농지용, 학교교지용, 비영 리법인 사옥용, 제1종 시설사업및 도로건설 사엽용은 제외 ② 세대당 100㎡ 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오피스텔, 스키장및 유원 지의 건설및 매입, 콘도미니엄의 매입 ③ 여신금지 업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댄스홀및 댄스 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탕업및 안마시술소, 건평 또는 대지 330㎡초과 식당업 부동산업



구 분	금지 내용
담보취득 제한 (중소기업 제외)	① 연면적 1/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및 당해 대지 ② 연면적 1/2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및 당해 대지 단 주택및 당해 대지 제외 ③ 법인소유 비업무용 부동산및 개인기업 영위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④ 개인소유 유휴토지 ⑤ 사치성 재산 ⑥ 제3자명의 부동산

자료 : 한국은행 자금부

3.3.1.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은행에 대한 여신금지업종제도 폐지는 은행의 주 고객군이었던 대기업 등의 자금수요가 축소되는 가운데 경쟁우위에 있는 일반은행들이 저축은행의 고유업무영역을 잠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됨으로써,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담보취득제한 폐지를 통해 은행이 상대적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한 개인차주와 기업여신을 거의 독점해 나가자 저축은행 거래대상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들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다.13)

3.3.2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3.3.2.1 제도추진배경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는 1972년 출범 시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상호신용보장기금'이 도입되어 운용되어 오다, 1983년 5월 신용관리기금법이 제정되어 신용관리기금이 출범하자 포괄승계 되었으며, 보장한도는 2천만원으로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45

<표 3-3>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거액의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도를 두어 일정액을 보호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 저축은행, 종 금사, 증권사는 2천만원, 보험사는 5천만원으로 차등하여 보장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국가경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¹³⁾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33-138.

말까지 전 금융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1년에 전 금융 권을 대상으로 5천만원 보호한도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당시 저 축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 는 이를 수용하여 은행권 등 타금융기관과 같이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정 하여 시행하였으며, 당시 이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보호한도를 낮게 적용할 경우 한도초과 예금의 이탈로 인한 연쇄도산의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스템의 불안요 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표 3-3> 예금보호한도 연혁

시기	97. 11월 이전		IMF외환위기 이후 ('97.11월~2000.12월)	2001년 1월 이후
보호한도	2천만원	5천만원	전액보호	5천만원
적용대상	은행, 상호저축은행 종금, 증권	보험	全 금융기관	全 금융기관

자료 : 예금보험공사

3.3.2.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일반은행과 같은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한 것은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2001년 1월 5천만원 한도의 부분예금 보장제가 시행된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GDP성장율 28.6%에 비해 통화량 (M2)이 과다공급(64.1%) 되어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과정에서 일반은행보다 상대적으로 1.0~1.5%p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수신고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경쟁관계인 상호금융이 2004년 1월부터 공적 예금보장 대상에서 제외(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 의존)되어, 이로 인한 반사적 이익도 향유하게 되면서 저축은행의 수신고가 증가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자금운용능력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14)

3.3.3 저축은행 명칭 변경

3.3.3.1 제도추진배경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출범하였던 상호신용금고는 수많은 시련과 굴



¹⁴⁾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39-153.

곡을 겪으면서도 구조조정 성과 및 업계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및 재무상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표 3-4>에서 저축은행 명칭변경전 부실여신 및 충당금 추이를 보면,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00년 6월 25.6%에서 2001년 6월 21.2%, 2001년 11월말에는 17.9%로 약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2001년 6월말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도 106.3%를 기록하고 있었다.

<표 3-4> 명칭변경 전 부실여신 및 충당금 추이

(단위: %, 억원)

				<u>(</u>
구 분	2000.6월	2000.12월	2001.6월	2001.11월
부실여신비율 1)	25.6	30.8	21.2	17.9
부실여신금액	46,028	46,028	29,954	27,509
충당금적립율 2)	92.0	97.0	106.3	
충당금규모	19,488	23,991	15,660	

주 : 1) 고정이하 여신금액/총여신금액 X 100

2) 실제적립액/기준적립액(적립기준 : 정상 0.5%,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 의문 75%, 추정손실 1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렇게 저축은행은 명칭변경 이전 여·수신증가와 당기순손실의 축소 등 경영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사고 우려와 부실한 금융회사라는 이미지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발생이후 1998년부터 계속된 적자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점포수 감소 등 경영실적은 여전히 호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당시의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사금융 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금고의 영업활성화가 요구되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미지 개선과 신인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서민금융기관이 퇴출되자 사금융업체에 의한 서민층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였고, 일본계의 대부업체가 고금리 상품으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을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2002년 3월 1일부터 현재의 명칭인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명칭변경과 함께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여 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에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하였다.(법 제5조) 이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시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 1인이 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 하였다.(법 제10조의 2) 아울러 경영진에의한 사고방지와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선임의무화와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법 제 10조의 3 신설)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법 제10조의 4 신설)토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출자자대출 행위를 방지코자 출자자대출이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설립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저축은 행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도모하여,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법인으로 설립하고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3.3.3.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은 원래의 목적인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통한 신인도 및 경쟁력을 제고시킨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은행이라는 명칭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일반은행과 동일한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 계기도 되었다. 그러한 결과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신용평가시스템 등기본적인 여신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과도한 수신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15)



¹⁵⁾ 박용한,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2014, p.80.

3.3.4 소액대출 활성화 조치

3.3.4.1 제도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부실 서민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어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심화되고 私금융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아래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1.7.19 정부는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서민금융기관의 점포규제 완화,업무 다양화, 결제시비스 기능 확충 등을 통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과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유인책 부여 등을 통한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이었다.16)

3.3.4.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자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자산 확대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급증하게 되어 2004년말에는 60.8%에 이르게 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17) 미구축과 금융회사간 소액대출 신용정보 공유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산 확대에 전념한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가 실패한 것이다. 최근 감독기관의 CSS 시스템 구축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먹구구식의 개인신용대출 시스템을 운용하는 저축은행들이 많아 자칫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실 심화시 리스크에 노출되는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인해 국내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에 대한 Risk는 정책당국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3.5 저축은행 계열화 허용

3.3.5.1 제도추진배경

2002년 이후 소액신용대출 부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2005년말 기준 적기시정



¹⁶⁾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63-165.

¹⁷⁾ CSS = Credit Scoring System

조치 저축은행 수는 총10개에 달하게 되었다. 감독당국은 예보자금의 투입 없이 사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부실화 되기 이전에 저축은행간 M&A 활성화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간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화되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이 용이해짐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 직후인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8건의 저축은행간 주식취득이 이루어져 계열을 형성하였다.

<표 3-5> 피인수된 8개 저축은행

인 수	부산	고려	솔로몬	솔로몬	한국	НК	삼화	현대 스위스	비고
피인수	중앙부산	예가람	나라	한진	영남	부산HK	솔본	예한울	

자료 : 박창균외(2011),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p.175.

3.3.5.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이는 결국 계열저축은행을 동원한 자산확대 및 대출시장 과점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열화 허용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과 함께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를 가져왔고,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재편되어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구도 변화는 과거 이러한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노출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18)

3.3.6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3.3.6.1 제도추진배경

소액신용대출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근본적인 저축은행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당시 저축은행권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건전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권 전반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태였고, 저축은행 업권내



¹⁸⁾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72-182.

부실화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서민금융 포함) 도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역할증대와 발전방안'을 작성하여 정부 및 금감원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대형.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중복규제(자기자본 20% 및 80억원) 폐지 등 영업기반 확충을 추진하였다.

3.3.6.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2006년 8월에 시행된 8.8클럽¹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영업활성화와 더불어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한도 확대로 인해 고위험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8.8클럽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숫자는 2005년말 33개에서 2008년 6월에는 66개로 두배 까지 늘어났으며, 이러한 8.8클럽을 중심으로 PF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2005년말 6.2조원에서 시행령 개정후인 2006년말에는 11.6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2011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단초가 되었다.

3.3.7 시장자율 M&A

3.3.7.1 제도추진배경

2008년 하반기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까지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었고, 당시 은행자본확충편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등 은행을 포함한 대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경기악화로 인한 PF대출 부실 등이 표면화되면서, 저축은행발 금융위기 가능성이제기되었으나, 예보기금, 저축은행의 적자(▲1.9조원) 등을 감안할 때 예보기금의 추가투입 없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은 부실저축은행을 건전한 인수자가 인수하여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경우, 영업구역외 지점 설치를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1945



^{19) 8.8}클럽 =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지칭함

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하되,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 <표 3-6>은 일반적인 M&A와 부실저축은행 M&A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 부실저축은행 M&A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일반 M&A	부실저축은행 M&A
대상 저축은행	제한없음	적기시정조치대상 저축은행 (예보 자금지원, 최근 2년내 경 영권 변경 저축은행 제외)
	재무건전성 충족	좌 동 (부채비율은 적용 배제 가능) 좌동(배제 가능)
	차입자금 아닐 것	좌 동
주식취득 승인요건 (인수자 요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사실이 없을것	좌 동(배제가능)
(2174 11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을 것	좌 동(배제가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아닐 것	좌 동(배제가능)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한 사 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없을 것	좌 동(배제가능)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특례적용 요건	1945 에 OF 다 해당사항 없음	BIS비율 8%충족 증자자금 예치 ●증자계획 제출시 BIS비율 5% 충족 자금예치 ●금융기관은 예치 면제 ●1년 이내 BIS비율 8% 달성 증자자금 비차입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인수,증자
		자금의 3배 이상
	자기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	좌 동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없을 것	좌 동
 지점설치요건	BIS비율 8% 이상	BIS비율 5% 이상(1년간)
기타린시파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적용배제
	지점설치 지역 설립자본금 해당 액 증자	좌 동
설치지역 및 지점수	영업구역내에 한함 지점수 제한 없음	영업구역외 설치 가능 경제적부담액 120억원당 1개지점 (최대 5개)



구 분	일반 M&A	부실저축은행 M&A
자기자본 특례	해당사항 없음	자기자본 특례인정 가능
동일인 여신한도 금액 기준(80억원) 배제요건	I RISH & X% OLAF	BIS비율 5% 이상(1년간) 고정이하 여신비율 배제(3년간)
유가증권 한도적용	저축은행의 子회사인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의 10%까지 투자 가능	저축은행의 子회사인 저축은행은 다른 부실저축 은행의 주식에 제 한없이 투자 가능

자료 : 박창균외(2011),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p.243.

3.3.7.2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한편, 부실저축은행 자율 M&A 인센티브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확대에 따른 수신 증가, 계열화에 따른 부실확대 등의 가능성이 야기되었으나, 부산저축은행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확대 문제는 M&A 자체보다는 당해 저축은행의 잘못된 영업행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인한 인센티브(영업구역외 지점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보다는 대주주 관련 불법대출, 과다한 수신유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계열사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장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부실을 직접적으로 확대 시키게 되었다.20)

1945

3.4 부실결과

3.4.1 여신완화 정책과 PF대출의 부실

3.4.1.1 PF대출 취급요인과 문제점

저축은행이 은행권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서민금융만으로는 성장이 정체되어 수익구조가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이 과열되게 되었고, 그 결과 늘어난 자금으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상품인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분야로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역시 2005년 이후 저금리 등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크게 호황을 맞게 되면서,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산 확대정책을 펼쳐 수신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를 부동산 PF대출에 과도하게 운용하게 되었다.



²⁰⁾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244.

한편,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행의 여신금지업종 제한 폐지를 원인(遠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조치와 시장자율 M&A를 근인(近因)으로 볼 수 있다. 최석표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 원인으로 소유구조의 문제, 대출시장의 경쟁심화,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 미흡을 지적하였다.21)

이러한 자산운용행태 초기에는 큰 수익이 발생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자 저축은행들은 너도나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그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 국내외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오면서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시장경색과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유발하게 되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 가속화되자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부도업체 수는 증가하면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국내 PF사업장의 사업시행이 극도로 부진해지면서 브릿지론을 주로 취급한 저축은행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게 되었으며,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부족하여타금융권에 비해 그 충격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건설경기의 대표적인 지표인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약 165천호에 이르렀고 준공후 미분양은 2008년말 4만6천여 가구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 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이 PF대출 한도규제 등 제도적 보완에 노 력을 기울였으나 실기한 측면이 강하고, 저축은행들은 자체 Risk관리가 거의 되지 못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계열화 심화와 맞물리면서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특히,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PF사업 공동대출 등으로 인한 동반 부실화가 진행되었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체계의 문제점 과 아울러 감독기관의 감독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박창균은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축은행 PF대출이 본격적으 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 4월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2004년도 하반기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자료에서 PF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적극적



²¹⁾ 최석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49-50.

인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2006년 7월에는 저축은행 대표와의 면 담을 통하여 직전년도 이익의 일부를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충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였다.²²)

3.4.1.2 PF대출에 대한 규제

PF대출의 부실 심화로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금융당국의 Risk관리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5년 이후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06년 8월 PF대출을 총여신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2007 년 6월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하였다. 2008년 12월과 2010년 9월에는 PF대출 사업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와 지원에 도 불구하고 PF대출의 부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2010년 1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유도 방안'을 수 립하였고, 2010년 8월 사업성 평가를 반영한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9월 부동산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도 입하였고, 아울러 해외 PF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을 금지시켰다. 2010년 9월에 는 PF대출 및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하였으며, 10월에는 대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는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하였다. 2011 년 3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등 다각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23)

3.4.1.3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정상화 추진

저축은행 PF대출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부실우려가 높은 PF채권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2008년 12월부터 2차에 걸쳐 KAMCO는 악화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PF채권 1.7조원을 매입하였고, 이후 글로벌



²²⁾ 박창균, 저축은행 사업구조 재편과 서민금융 발전방안, 한국금융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 pp.99-100.

²³⁾ 박용한,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2014, pp.99-100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PF사업장의 사업악화가 지속되자 2010년 4~5월중에 전체 714개 사업자의 PF대출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표 3-7>과 같이 사업성에 따라 '정상', '보통', '악화우려' 3단계로 평가하고,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2010년 4~6월 3차로 3.8조원을 매입24)하였다.

<표 3-7> 저축은행 PF대출 평가내용 및 등급기준

구 분	평가내용 및 등급기준
정상사업장(상)	사업진행 상황과 사업성이 모두 양호한 사업장
주의사업장(중)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
악화우려사업장(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자료: 저축은행중앙회(2008.12.31),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PF대출 매각 61개 저축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7천억원 규모의 증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였고, 이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하였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PF채권 매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데다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표 3-8>에서와 같이 PF사업장 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4~6월 중에 매각을 신청한 45개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 1.9조원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표 3-8>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추이(금액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08.6		08.6월말	08.6월말 기준		09.12월말 기준		11.3월말 기준		
7	正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비고	
정	상	67,044	54.9	33,158	26.5	6,471	9.2		
보	통	39,926	32.7	52,695	42.2	30,227	43		
부실	우려	15,130	12.4	39,089	31.3	33,601	47.8		
7	계	122,100	100	124,942	100	70,299	100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3.4.2 계열화 허용과 대형화에 기인한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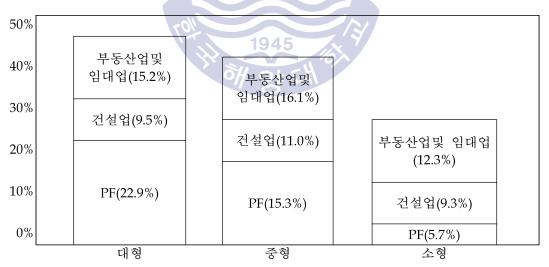
3.4.2.1 대형화의 과정

저축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부실 저축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



^{24) 1}차(08.12월) 0.8조원, 2차(09.3월) 1.2조원, 3차(10.4~6월) 3.8조원, 4차(11.4~6월) 1.9조원 매입

실은행 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저축은행산업이 빠르게 계열화, 대형화되는 유인이 제공되었고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 축은행들이 외형확장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면서 급속한 자산증가 및 건전 성 측면에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징적으로 대형저축은행 은 중형이나 소형저축은행에 비해 부동산관련 업종, 특히 PF대출의 비중이 높 아 저축은행산업의 위험 증가가 대형저축은행에 의해 주도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산규모가 큰 저축은행 일수록 유가증권 운용 및 중소기업 대출부문에 자산운용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0년 6월말 현재 대형계열인 부산(10.5 조), 한국(9.5조), 솔로몬(8.5조)등 2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11개 였으나, 2011년초에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발생이후 사모펀드가 대주주로서 현재 매각이 진행중인 HK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제3자 계약이전방식 또는 가 교저축은행을 거쳐 제3자에게 매각당함으로써 간판을 내리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그림 3-1>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발생 직후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 산 관련 대출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형 및 중형저축은행에 의해 주도된 PF 대출이 부실화됨으로써 2011년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5)



<그림 3-1>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부동산관련 대출현황26)



²⁵⁾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127-133.

^{26) 2011}년 6월말 현재

3.4.2.2 계열화 및 대형화 추구의 결과

< 표 3-9>에서 보듯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발생 이전인 2010년말 29개였던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수가 2015년 6월말 현재는 10개로서 2010년말에비해 19개가 퇴출 또는 합병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형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록3> 에서와 같이 현재는 영업한도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형화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총자산 규모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대형과 소형의 저축은행들을 동일한 영업규제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표 3-9>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변동현황

구분	저축은행사태이전('10년말 기준)	현재(2015년 6월말 기준)
개수	2971	10개
해당 저축은행	솔로몬, 토마토, 토마토2, 제일, 제일2, 부산, 부산2,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경기, 한국, 진흥, HK, 미래, 동부, 모아, 신라, 푸른, 대전, 프라임, 에이스, 삼화, 더불유, 서울, 부산솔로몬, 한국투자, 한신, 보해, 신안	SBI, HK, 한국투자, OK, JT친애, 모아, OSB, 현대, 웰컴, 동부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3.4.3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과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릴헤저드

3.4.3.1 모럴헤저드의 발생원인

저축은행의 경우 소유구조 집중 및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 부당행위와 이로 인한 부실은 빈번하게 금융시장의 부담과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왔다. 저축은행발 금융사고와 부실화 문제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문제와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권 등과 연계한 비리의혹 등이 불거져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저축은행 명칭변경 등의 정책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3.4.3.2 모럴헤저드의 사례

2011년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크게 표면화되기 이전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 진의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로는 2000년 ~ 2001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3대 게이트 사건(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을 들 수 있다. 당시 상호저 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인인 이들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 호저축은행 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 식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기업사냥과 주가조작 등의 금융비리를 저지르고 또한, 권력기관에 유착한 의혹이 제기되어 크게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2011년 부산, 삼화, 보해저축은행 등의 수사결과에서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경영진단 과정에서도 어김없 이 이러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3.4.3.3 모릴헤저드의 유형

모럴해저드의 유형으로는 주가조작 시도를 위한 불법대출, 자금세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계열사 전환사채(CB) 횡령, 연체대출 조작 등 분식회계, 대출서류 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배임, 제3자 명의 와 임직원부정대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명의 차용 SPC설립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소액분할대출 편취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은물론 직원과 정치인, 감독기관 등도 연관되어 있어 사회적 지탄과 저축은행에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이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인 사고의 결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결핍이 더 큰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7)

3.5 저축은행산업의 현안 및 해결과제

저축은행 업계는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과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항 역시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직접적인 발



²⁷⁾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2011, pp.294-325.

전방안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안 제시로 보면 될 것이다.

3.5.1 명칭변경 재론

저축은행의 명칭은 1972년 출범 이후 '상호신용금고'를 계속 사용하여 오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하고,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을 사용하다 2010년 3월 법률개정으로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명칭 변경되기 이전인 '상호신용금고'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금융 이용자가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금융당국도 대주주의 사금고화한 저축은행의 명칭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예금감소와 고객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명칭의 환원 또는 변경문제는 일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저축은행업계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안정권에 진입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28)

3.5.2 예금보험료 인하

현재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전체 예금잔액에 대하여 0.5%(일반보험료0.4%+특별기여금 0.1%)로서 타 금융권(은행 0.08%, 보험 0.15%, 금융투자 0.15%)에 비해 높다. 2011년에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탓에 0.35%에서 0.5%로 0.15%p 인상되었다.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의 운용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예보료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조달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부실채권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경영도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예보료율의 인하를 요구하는 저축은행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투입한 27조원의 기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장은 2018년쯤에는 예보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75%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바 있고, 예보에서도



²⁸⁾ 박용한,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2014, pp.284-285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한결 개선되고 있어 예보료도 대체적으로 할인기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예보료 할인 공감대가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등보험료율 평가모형에 따라 <표 3-10>에서 보 듯이 예보료는 자본적정선,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지표가 80%를 차지하고 그밖에 금융사고 등 비재무지표가 20% 반영되어 평가된다.

<표 3-10> 예금보험료 주요 평가요소

<평가부문>

기본평가(80점)

\ 3 /13/13/
위기대응능력(40점)
건전성 관리능력(20점)
손실회복능력(20점)

/ 퍼기하모~

<평가지표>
자본적성성 및 유동성 관련지표
자산건전성 관련지표
수익성 관련지표

보완평가(20점)

재무위험 관	·리능력(10점)
비재무위험	관리능력(10점)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등

자료 :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한편, 예보료 인하요구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예보에서는 그대신 현재 6%인 할인·할증폭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높혀나갈 계획을 밝혔다.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1등급은 5% 할인, 3등급은 1% 할증인데 내년부터 3등급 할증율을 2.5%로 올린다. 2017년부터는 3등급 할증율을 5%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1등급과 3등급의 할인·할증율을 각각 7%로, 2021년 이후로는 각각 10%로 차등화 폭을 높일 방침이다.

<표 3-11> 예금보험료 등급별 할인·할증폭주)

등 급	소프트랜	[당 기간	본격 가동기간			
о н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	△5%	△5%	△5%	△7%	△10%	
2등급	0%	0%	0%	0%	0%	
3등급	1%	2.50%	5%	7%	10%	

자료 :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주) : 현재 예금보험료의 구조는 일반보험료 0.4% + 특별기여금 0.1% = 0.5%의 구조로 되어 있슴. 등급별 할인·할증요율 적용은 일반보험료에만 적용함

1등급 : 75점이상 0.38%, 2등급 : 39.7점이상~75점미만 0.40%, 3등급 : 39.7점미만 0.404%



3.5.3 일본계 자금의 저축은행 투자 및 영업강화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일본 금융그룹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부업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시기를 틈타 저축은행 인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표 3-12>에서 보듯이 저축은행 인수의최초 사례는 일본의 오릭스 그룹이 2010년 푸른제2저축은행을 인수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전북의 스마일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OSB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중견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가 2012년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여 JT친애저축은행으로 개명하였으며, 2013년 2월 일본의 SBI그룹이 우리나라 저축은행 업계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계열사 3곳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상호를 SBI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Rush&Cash 브랜드 대부업체인 에이엔피파이낸셜그룹은 2012년 5월 부실화된충남의 한주저축은행을, 2013년 2월에는 서울의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현재 OK저축은행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표 3-12> 일본계 자금의 저축은행·대부업 진출현황 (다위 · 억위)

					<u>(단위 · 국전)</u>
구 분	기관명	인수년도	일본대주주	대출	비고
	OSB저축은행 (舊, 푸른2저축은행)	2010.12월	오릭스그룹	9,761	
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舊, 미래저축은행) JT저축은행 (舊, SC스탠다드저축은행)	2012.10월 2015.1월	J트러스트	12,213	
	SBI저축은행(현대스위스2,3,4)	2013년 2월	SBI	26,587	계열사포함
	OK저축은행 (舊, 한주저축은행) (舊, 서울저축은행)	2012년 5월 2013년 2월	J&K Capital	13,403	
대부업 -	웰컴저축은행 (舊, 신라저축은행)	2013년 4월	웰컴크레디트 라인	8,565	
	산와머니	2012년 설립	산와그룹	12,905	14.12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본계 자금의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배경으로, 대부업의 한국 진출에서 얻은 자신감과 영업시스템이 유사한 한국의 저축은행 사업에 유리한데다 일본의 경기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투자는 장기투자 목적이 크다고 본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특징은 저금리 조달, 고금리 신용대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부유출 논란 등 일본 금융자본의 서민금융권 장악에 대한 보다 나은 냉철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외국자본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조건 이행상황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추가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확고한 매각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은 중소형저축은행들의 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계 및 중국계 등 외국자본, 대부업계열 금융회사를 비롯한 핀테크업체29) 까지도 저축은행 인수 추진 역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3.6 저축은행산업의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3.6.1 최근 동업계 동향

저축은행중앙회는 2015. 6월말 기준의 저축은행 경영현황 자료에서 예전과는 달리 <표 3-13>과 같이 저축은행을 Peer Grouping 하였고, 각 Peer 그룹별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저축은행이 어떤 영업형태를 나타내고 어떤 경쟁구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²⁹⁾ 코스닥 상장사 텍셀네트컴(네트워크 보안)이 공평저축은행 지분 34%를 24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실사를 진행중이다. 동사는 2012년 충남 천안의 세종저축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 핫텍은 대구를 기반으로 영업중인 유니온저축은행의 지분 45.4%를 120억원에 인수하고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머니투데이 2015.11.12)

<표 3-13> 저축은행 Peer그룹 편성

	대형	은행 • 금융 지주계열	가계신용 대출주력	가계대출 중심	기업대출 전문	기업대출 중심	혼합형 포트폴리오
편성	총자산 1조원 이상	은행·금융 지주계열	가계대출 60%이상 & 가계신용 60% 이상	가계대출 60% 이상(가 계신용 60% 이상 제외)	기업대출 80% 이상		기업대출 60% 미만 또는 가계 대출 60% 미만
	대형	은행 • 금융 지주계열	가계신용 대출주력	가계대출 중심	기업대출 전문	기업대출 중심	혼합형 포트폴리오
편성	동부, 모 아, OSB,	BNK, IBK, KB, NH, 신 한, 하나, 한 국투자(7개 사)	타, 한성,	JT, 강원, 고 려, 대명, 대 아, 스마트, 아주, 예가람 (8개사)	The-K, 국제, 남양, 민국, 부림, 삼보, 삼성, 삼정, 센트럴, 솔브레인, 스카이, 신안, 안양, 에스앤 티, 우리, 융창, 평 택, 푸른, DH, 홍국 (20개사)	구미, 대백, 대 신, 동양, 드림, 세람, 세종, 안 국, 영진, 오투, 인성, 인천, 조 흥, 진주, 한신, 한화(16개사)	공평, 금화, 대 원, 대한, 더블, 동원제일, 삼일, 삼호, 아산, 엠에 스, 오성, 유니 온, 조은, 청주, 키움, 페퍼(16개 사)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다른 한편으로는 <표 3-14>에서 보듯이 영업현황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발표함으로써 Peer그룹별 영업현황을 비교가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 바라는 업계 재편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Peer Group별 주요 경영지표(요약)

(단위: 억원, %)

									(- 11 .	1 4 /0)
구분	총자산	대출금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ROA	ROE	NIM	BIS비율	연체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형	108,189	88,890	10,756	1,492	1.50%	15.10%	7.25%	12.58%	14.70%	15.90%
은행· 금융지주계열	62,407	53,748	10,240	759	1.27%	7.74%	4.76%	17.23%	7.10%	9.30%
가계신용대출 주력	51,175	39,037	4,479	251	0.65%	7.49%	12.06%	13.85%	11.40%	7.90%
가계대출 중심	27,524	22,727	3,579	787	3.10%	24.59%	8.90%	17.31%	9.60%	11.60%
기업대출 전문	62,460	48,201	8,157	826	1.32%	10.98%	4.53%	15.50%	12.30%	14.20%
기업대출 중심	50,747	39,282	6,349	689	1.35%	11.55%	4.95%	15.35%	12.10%	12.70%
혼합형 포트폴리오	39,630	29,791	2,383	67	0.18%	3.10%	5.47%	9.78%	10.40%	10.60%
합계(평균)	402,132	321,676	45,943	4,871	1.30%	11.63%	6.51%	14.37%	11.60%	12.40%

주) 은행·금융지주계열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주): 2015년 6월말 기준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2014회계년도(2014.7.1~2015.6.30) 저축은행의 재무지표는 전반적으로 과거에비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는 각 Peer group별로영업결과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각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의해 총자산과 대출금부문의 절대 우위에 힘입어 순이익 규모가 제일 크나, 건전성 지표인 연체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익성 지표인 ROA, ROE, NIM은 동업계 상위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룹으로 향후 지방은행 으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경우 제일 우선순위에 해당되 는 그룹이 될 것이다. 다음은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으로 탄탄한 경영기반과 지속적인 내부유보로 순이익 및 BIS비율 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진입 초 기부터 시장친화적 전략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양함으로써 NIM은 동업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가계신용대출에 주력하는 저축은행은 고금리 정책에 의해 NIM은 양호하나 연체비율 등 건전성 부문은 취약하며, 대부업체 인수 저 축은행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역시,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 는 저축은행도 고금리 정책에 의해 수익성 및 BIS비율 양호하나, 건전성 비율 은 취약하며, 가계대출 주력 또는 중심의 저축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1금융권의 중금리시장 진출, 금리인하 압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서 외형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룹이 될 것이 다. 반면, 기업대출을 전문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저축은행 그룹은 외형규모에 힘입어 순이익 규모는 상위를 유지하나, PF대출에 기인한 건전성 악화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대출 중심의 영업형태를 취하 고 있는 저축은행도 외형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 성(ROA, ROE)도 상위이나 기업대출의 특성상 건전성 부분의 관리는 필요하다. 혼합형 포트폴리오 위주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총 자산 규모 2,000억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업형태로서 재무지표는 건전성을 제외하고는 동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영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적시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축 적해 나가야 할 그룹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Peer group별로 나름대로의 영업적 특징을 가져가고 있으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각 저축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생존전략을 어떻게 선제적이면서 차별화되게 수립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3.6.2 향후 전망

저축은행업계는 1972년 태동한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낙후된 경영시스템과 독선적인 지배구조, 유착된 감독기능,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등 전근대적이고 복합적이며 구조적인 결함하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중·장기적인 면보다는 그때그때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은 오늘의 위치에서 안주하도록 외부환경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은 출범에서부터 성장기와 쇠퇴기 를 겪으며 어떻게 현재까지 이르렀는가를 돌아보고, 중흥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제도개선과 저축은행 자체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집중 조명해 보았다.

저축은행업계는 구조조정 이후 업권내 경쟁이 심화되었음은 물론 개인 신용 대출등 타업권과 경쟁도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금리에 대한 여론 악화와 가 격 상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경쟁구도가 매우 복잡해 졌으며, '서민금융기관' 이라는 정체성도 많이 희석되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할 시 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처해 있는 또 앞으로 처해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SWOT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하 여 전망해 보았다.

우선 강점(Strength)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 왔지만 가장 최근의 예로 2011년 발발된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4년말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업계 재편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고용안정과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총자산 20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외국계 자본계열 저축은행 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컨소시움 대출 등에 있어 상호 동반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부업체 인수 저축은행도 인 수조건30)이행을 위해 내부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로서 저축은행 업계 가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기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2014년 회계연도(2014.7.1~2015.6.30)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이 <표 3-15>에서 보듯이 7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79개 저축은 행의 이익이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각 회계연도 별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는 <부록2>와 같다.

<표 3-15> 저축은행(전체) 당기순이익 추이

11. 211.	(단위 : 억원)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007년	3,367
2008년	△566
2009년	△7,728
2010년	△2조7,777
2011년	△1丞6,590
2012년	△1조1,252
2013년	△5,059
2014년	4,871

회계연도 : 당해년 7월 ~ 이듬해 6월말

자료 : 금융감독원

또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이었던 PF대출에 대하여는 <표 3-16>에 서 보듯이, 그동안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KAMCO에 사후정산방식으로 매각했던 저축은행의 PF대출이 조기 환매되면서 충당금 적립 요인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오히려 충당금 환입요인 발생되어 저 축은행 7년만의 흑자전환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³⁰⁾ 대부업체 인수 저축은행 이행조건

⁻ 인수일로부터 5년간 대부잔액(총자산) 40% 감축

⁻ 대부업체 우량고객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 대부업 광고비용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

⁻ 대부잔액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 3.5배 이내 운용

⁻ BIS비율 업계 평균이상 유지

<표 3-16> 저축은행 PF대출 KAMCO매각/환매 현황

(단위 : 억원)

				1 1
구 분	매각일자	금 액	환매(예정)일자	매각방식
1차	2008.12.30	5,023	2013.12월	* 정산방식 : 사후정산
2차	2009.3.18	12,416	2014.3월	*매입대금지급 : 전액 KAMCO 무보증
3차	2010.6.30	37,493	2015.6월	회사채 * 저축은행 중앙회는 KAMCO에 지급
4차	2011.6.30	18,912	2016.6월	보증 의무 부담(해당 저축은행은 중
합 계		73,844		앙회에 담보제공)

주) 2015년 및 2016년 환매 예정이었던 매각건은 조기정상화로 인하여 2014.9월말로 환매 완료되었음

그리고 저축은행업계에는 여전히 고유의 고객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밀착 형 관계형금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에 반해 약점(Weakness) 요인으로는 전산 프로세스 부분을 들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5개(BNK, KB, NH, 신한, 하나) 금융지주계열과 7개(SBI, HK, OSB, 대신, 동부, 웰컴, 푸른) 대형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장환경에 맞는 시의적절한 시스템 구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이 부담이 되는 저축은행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중앙회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어 각 저축은행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각각의 규모가 다르고 지배구조가 상이한 저축은행의 의견을 한곳으로 집약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Big-data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고, 분석능력 또한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Fin-Tech 시장진입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기업 상호간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nnance)가 아직도 취약한 구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편된업계의 구도하에서 본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심에는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 여진다.

그리고 여전히 취약한 여신심사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능력의 약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는 2014년초부터 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는 인식하에 그동안의 각종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 왔으며, 그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물론이러한 정책변화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달려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 '저축은행 발전전략 위원회' 자체 추진과제 추진현황(2014.7.15)
- --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2014.9.17)
- -- 저축은행 주요 감독방향(2014.10.22)
- --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2015.2.4)
- --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2015.3.17)
-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015.6.22)
-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2015.9.1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국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위주의 규제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수익원 발굴에도 적극적인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방카슈랑스 판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판매, Gold-Bar 판매 외에도 2015년 1월부터 KB국민카드 판매대행, 2015년 5월부터할부 금융업 취급허가, 편드판매 허용 등 수수료 수입 증대를 통한 저축은행의금리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표 3-17>에서 볼 수있듯이 저축은행의 영업규모 추이는 2012년 12월말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하향추세에 놓여 있었지만, 2015년 6월말에는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 섰음을 알 수있다. 총자산도 2년반만에 40조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주요지표에서 회복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자기자본과 예대율도 자본확충과 여신축소로 인하여 점진 상향되고 있다. 이는 당국의 구조조정 효과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표 3-17> 저축은행 주요 영업규모 추이

(단위: 억원, %)

				(= 11 · 1 = 1 /0)
구 분	2012.12월말	2013.12월말	2014.12월말	2015.6월말
자 산	490,123	389,764	378,602	402,132
(대출금)	(322,101)	(290,911)	(300,153)	(321,676)
예 수 금	427,905	331,201	323,871	342,824
(정기예금)	(397,864)	(304,425)	(293,442)	(310,716)
자기자본	31,206	33,743	41,569	45,943
예 대 율	75.27	87.80	92.70	93.83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경영현황(분기보)

위협(Threat) 요인으로는 핀테크 시장 확장추세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이다. 최근 김종현은 핀테크는 모바일 시대와 유사하게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핀테크 1.0은 무인자동화기기(ATM)의 등장이었고, 핀테크 2.0은 인터넷뱅킹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핀테크 3.0은 휴대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실현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구분지었다.31)

앞서 약점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이 <표 3-18>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맥킨지의 보고서³²⁾가 나왔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심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18>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관련 일정

2015년9월30일~10월 1일	1차 예비인가 신청		
2015년 10월	금융감독원 심사		
2015년 10월~11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카카오,K뱅크)		
2016년 상반기	본인가 승인		
내년 은행법 개정 이후	2차 예비인가 심사 계획		

자료 : 금융위원회



³¹⁾ 김종현,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2015, pp.11-13.

³²⁾ 금융시장에 디지털 열풍이 불면서 은행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이 2/3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은행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맞서 기존 사업모델을 방어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머니투데이 2015. 10.1)

맥킨지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대출분야 특히 중금리대출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들의 수익감소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일 마감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움을 현황을 <표 3-19>을 통해 보면 앞으로 시장판도 변화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9>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 컨소시움 구성 현황

구 분	카카오컨소시엄 (카카오뱅크)	인터파크그랜드컨소시엄 (I-뱅크)	KT컨소시움(K-뱅크)
참여사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 민은행, SGI서울보증, 카카오, 넷마블, 로앤, 이 베이, 예스24, 코나아니, 텐센트, 우정사업본부 등 11개사	인터파크, GS홈쇼핑, BGI 리테일, SK텔레콤, 예로금 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 이션즈, NHN엔터테인먼 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웰컴저축은행등 15개사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스,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다날, 한국정보통신등19개사
차별화 포인트		소상공인 겨냥 서비스	온·오프라인 제휴/기반 편의성 극대화

자료 : 서울경제 (2015. 10. 2)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500억원 예상) 등 진입장벽 완화와 업무범위, 건전성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관련 주요 쟁점 현황은 <표 3-20>과 같다.

<표 3-20>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쟁점 현황

쟁 점	특 징
은산분리	사업주도권 가질 IT기업 의결권 없이 최대 지분 10%에 불과
상호출자제한	KT.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은산분리 완화에도 혜택 배제
빅데이터 수집범위	개인정보 수집범위 제한 놓고 논란 예상
IT시스템 구축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 여부 및 신규 서비스 맞춤형 시스템 구축 여부

자료 : 파이낸셜 뉴스(2015. 10.1)

또한, P2P(Peer to Peer : 개인 대 개인 대출)시장 확대도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현재 P2P시장은 8퍼센트 ,렌딧(Lendit), 펀다



(Funda)등 6개업체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급격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서도 법규상 P2P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일단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재차 가능여부를 타진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P2P 대출업체의 대출심사 방식도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심사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빅-데이터에 의존한 SNS 분석기법과 행동분석을 통한 심사방식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여 대출심사 과정을 차별화 하였다.

최근 P2P대출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담보대출이 등장하고 있으며, 분산투자를 통한 투자위험 완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출시하였고, 금리인하 및 차등화와 투자리스크 완화를 위해 심사기법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 서비스를 통해 투자 수익외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3)

<표 3-21>은 현재 영업중인 P2P 대출업체 현황이다.

<표 3-21> P2P 대출업체 현황

업체명	8퍼센트	렌딧 (Lendit)	편다 (Funda)	어니스트 펀드	빌리	테라펀딩
서비스 시작	2014.12월	2015.5월	2015.4월	2015.6월	2015.7월	2014.12월
주요고객	개인, 소상공인	펀드형태	소상공인 전문	맞춤형	불특정 다수	시공업체

자료 : 중앙일보 (2015. 11.5)

그리고 제1금융권의 중금리 신용대출시장34) 확대에 따라 업권간 영업장벽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입지는 점점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되어 가고 있다. 비록 시장 잠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은 되지만,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잠식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³³⁾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국내 P2P시장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2015, p.4.

³⁴⁾ 중금리 대출은 연6%~10%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시장은 연4~5%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제1금융권)과 연15%대 이상의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케피 탈,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으로 나눠져 있다. 중금리 대출시장은 5~7등급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신용자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것이며, 결국은 한정된 시장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저축은행이 대항 할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 게임의 결과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또 다른 부실의 씨앗을 잉태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아울러 2015년 11월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 징검다리론'35)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금융권의 시장진입에 대한 경계심이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법정최고 상한금리(현재 34.9%) 인하 압력도 모처럼 흑자추세로 반전된 저축은행의 경영기조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업체의 무차별적인최고금리 적용에 따른 여론의 화살이 저축은행에까지 미쳤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대부업체와 같은 금리적용 행태를 보여온 저축은행들의 타격은 불을 보듯뻔하다. 최근 이규복36)도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저축은행업계의 이익을 연간729억원에서 최고 2,207억원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변화에 저축은행을 적응시키기 위해 감독당국에서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된 CSS시스템 구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독려하기위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등급 산출과정을 정교하게 다듬고 평가를 세분화시켜금리 차등화를 유도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과 시중은행-저축은행간 연계영업강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연계영업의 경우에는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하고 영업구역외 대출비율 제한에서 배제하는 등 당근정책도 펴고있다.

결국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 감소를 외형확대로 보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개별 저축은행 CSS의 관리.보강이 시



³⁵⁾ 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5년 11월부터 시행을 예정으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대상자의 조건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성실상환자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책금융 상품은 정부가 보증하는 사회공헌 측면이 강하고 또 원래 저축은행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며 서민들이 저축은행에 머무르는 것보다 1금융권을 이용해 9%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에 있어 새로운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5.9.21 파이낸셜 뉴스)

³⁶⁾ 이규복, 저축은행 대출포트폴리오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5, pp.15-16.

급하다. 최근 김형찬37)도 다양한 금리구조에 유연한 CSS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별로 차등화된 한도와 금리적용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신용대출 증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가 부실심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도 고객에 대한 과도한 고금리부과는 상환가능성이 높은 생산적 고객 대신 투기적 고객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위험을 높이며, 이는 다시 대손율을 끌어 올려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을 높임에 따라 적정금리 부과를 통한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할 것이다.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저축은행업계는 낙관적인 측면과 비관적인 측면이 여전히 양존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 자산규모와 지배구조, 비즈니스 모델이상이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시행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한편으로는 규제완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강화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정책을 펴더라도, 이같은 저축은행의 현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45



³⁷⁾ 김형찬, 저축은행 신용시장 변화와 CSS운영 현황 및 시사점, NICE평가정보, 2015, p.49.

4. 발전방안

4.1 정책의 역할

저축은행은 법 제4조에서 6개 권역별38)로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과 대형화의산물로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수와 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여신도 부동산 관련업종에 집중되어 지역금융의 강점인 관계형금융39)의 기능도 취약하다. 또한, 지역밀착경영이나 지역사회 공헌 부문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매우 빈약하여 활발한 지역밀착 경영을 펼치는 지역은행,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실정이다.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인가가 향후 동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앞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당면한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원인을 크게 보게 되면 소유와 지배구조의 취약성, 먹거리 부족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해소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제도 개선 악용과 정부의 미흡한 구조조정 정책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장윤정도 저축은행업권의 부실문제는 단지 '감독실패'에만 연유한 것이 아니며 보다근본적으로는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40) 정부에서도 그동안나타난 저축은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대부분 사후처리를 위한 조치에 그쳤던 면



³⁸⁾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³⁹⁾ 관계형금융이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과 장기적이고 밀접한 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비공개정보나 소유 자의 인격 등 자세한 내부정보에 기초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에 비대칭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중소기업및 영세업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안 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⁴⁰⁾ 장윤정,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61-64.

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발전방안과 함께 현재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방향 제시는 저축은행 부실의 최대 원인이었던 대형화의 폐해, 소유와 지배구조의 낙후성,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하였다.

4.2 발전방안

4.2.1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2009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수준의 자산건전성이 확보된다면 대형저축은 행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41)을 밝혔으며, 그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서민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에서 무수익여신채권을 매입42)하면서 부풀려졌다고 보고 순수 서민대출 비중이 전체 여신에서 35% 이상인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에 대해언급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이러한 시도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최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경영성과도 흑자로 전환되는 등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자 당국에서는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표 4-1>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요건 비교이며 <표 4-2>은 저축은행 6개 영업구역별 영업현황이다.



⁴¹⁾ 금융위원회는 2009년 7월 국회 금융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서민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⁴²⁾ 당시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기존 주력 영업부문이었던 PF대출 감소로 별도의 투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NPL(Non Performing Loan : 무수익여신) 시장에 뛰어 들었다.

<표 4-1>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요건 비교

구	분	지방은행	저축은행		
최저 자	본금	250억원	120억원		
최대주주	지분율	15% 이하 제한없음			
BIS 자기자	본 비율	8% 이상	7% 이상 ^{주1)}		
미소츠다그	정 상	0.85%	0.50%		
대손충당금	요주의	7%	2%		
요구불예금(Co	re Deposit)	10.10%	2.30%		

기준: 2015. 6월말

주1) 총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8% 이상(2015. 9. 10 금융위 보도자료)

<표 4-2> 저축은행 영업구역별 현황

(단위: 개, 조원)

구 분	저축은행수	자산규모		
서울	23	22.2		
인천.경기	19//	9.2		
부산.울산.경남	12	3.5		
대전.충남.충북	7	2.1		
광주.전남.전북.제주	7 %	1.3		
대구.경북.강원	11	1.9		
합계	79	40.2		

1945

기준: 2015. 6월말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4.2.1.1 정책방향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를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현재까 지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 저축은행의 대형 화가 초래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형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2015.9.10 '민간금융회사 역할 강 화 방안'에서도 총자산 1조원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기준을 7%에 서 8%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BIS비율 관리는 소극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에서 대형저축 은행의 지방은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저축은행 출현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자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축적하여 대형화에 성공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대형 저축은행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환시까지 관리하거나, 감독당국이 강제적으로 분할하여 매각을 요구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실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 모기지론, 개인 신용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2.1.2 정책효과

이러한 사례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때 일정기간동안 조건을 이행토록 한 조치를 참고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기대되는 정책의 효과로는 저축은행 대형화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소규모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장에서 생존해 나갈 수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1945

4.2.2 합병의 유연성 확보

4.2.2.1 정책방향

정부는 2015.9.10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및 합병에 따라 광역화된 저축은행이 증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의본질에 부합하지 않게 전국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 개선방안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외 지점설치도 금지하였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무분별한 영업구역 확대는 당연히 규제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저축은행이 영업부진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만한다는 것인데, 정책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동업계는 물론 당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P2P시장 확대, 최고금리인하, 제1금융권의 중금리 시장 진출(징검다리 론)등으로 앞으로 저축은행시장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하여 모처럼 흑자전환에 성공한 저축은행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영업구역 및 자산규모의 격차가 심하여 일률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자산규모 1천억원대의 소형저축은행들은 시장잠식이 가시화될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는 첫째, 일정규모 이하의 저축은행 또는 6개권역내의 저축은행이 상호 합병을 요청할 경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에의 참여 또는 업무제휴를 유도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완화를 도모하고 셋째, P2P 시장 진출을 원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여 업권간 경쟁심화 등에 따라 민간서민금융회사의 고객기반 위축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2.2 정책효과

대형화를 전제하지 않는 저축은행 상호간 자발적인 합병은 자동적인 소유의 분산으로 계열화를 방지하고, 시너지의 극대화를 창출함으로써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터넷전문은행에의 참여 또는 업무제휴는 저축은행의 낙후된 CSS시스템을 고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며, P2P시장 참여는 비이자수익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약탈적 금리 추구기관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정착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1945

4.2.3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내부통제 강화

4.2.3.1 정책방향

과거 저축은행은 최대주주 지분율의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사 금고화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근절방안 또한 필 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능및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 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에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임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하고,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하여는 소유와 경영을 엄격히 구분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둘째, 총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감사나 사외이사는 철저하게 대주주나 경영진과 분리된 전문인으로 선임 운영되어야 하며 셋째,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고 임기를 보장하며 독립성및 권한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2.3.2 정책효과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거와 같은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동조자적 행위에대해서도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4.2.4 지배구조 개선

4.2.4.1 정책방향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참여로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과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2011년 이후에는 자금여력이 풍부한 금융지주사가 인수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즈니스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



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계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지배구조형태로서 가교저축은행으로부터 주로 P&A방식에 의해 인수된 저축은행이다. 대주주는 주로 기존의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인수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로는 대부분 20위권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표 4-3>는 각각의 인수주체별 저축은행 인수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3> 금융사의 저축은행 인수 현황

구 분	인수금융사	저축은행명	인수후 저축은행명	(구)본점 소재지	인수일자	인수방식
	DNIL/ 7. O	프라임	DNIIC	서울	2011. 12	계약이전
	BNK금융	파랑새	BNK	부산	2011. 12	계약이전
	신한금융	토마토	신한	경기	2011. 12	계약이전
0 30 7 0	KB금융	제일	KB	서울	2012. 1	계약이전
은행금융 지주	0 키그.0	삼화	우리	서울	2011. 3	계약이전
	우리금융	솔로몬	74	서울	2012. 9	계약이전
	하나금융	제일2		서울	2012. 2	계약이전
		에이스	19하나	경기	2012. 2	계약이전
		한국	HZAZ	서울	2012. 9	계약이전
		부산	01	부산	2011. 11	계약이전
특수은행	IBK	경은	IBK	울산	2011. 10	계약이전
국무단생	IDK	토마토2	IDK	부산	2012. 10	계약이전
		영남		부산	2013. 2	계약이전
		부산2		부산	2011. 8	계약이전
	대신증권	중앙부산	대신	서울	2011. 8	계약이전
증권사		도민		강원	2011. 8	계약이전
	현대증권	대영	현대	서울	2011. 11	경영권이전
키움증권		삼신	키움	경기	2012. 4	경영권이전
- ই	합계	17				

자료 : 금융위원회,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



4.2.4.2 정책효과

정도경영을 지향하고 자산규모와 성장을 건실하게 추구하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을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중심축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정책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검증 가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장질서의 건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 각종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 론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의 태동 과정을 보면, 1970년 초반 제1금융권은 대기업이나 건설업 등 정책자금 지원에만 집중되었고, 일반 서민과 영세기업은 이러한 금융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고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무진회사나 사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과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972년 8월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긴급명령 15호(8.3조치)를 발표하였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단기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등 사금융 양성화 3법을 제정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는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화 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사태의 결과, 위축된 서민금융시장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을 대상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허용, 자율적 M&A를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고위험·고수익상품인 부동산 PF대출을 확대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로모럴해저드가 극심하였으며, 이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 및 사외이사, 준법감시인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회계법인과 결탁한 분식회계, 부실공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임기응변식 정책대응과 감독기관의 유착의혹으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이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저축은행은 불법, 부실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게 되어 고객



들로부터의 외면은 물론 설립 취지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도 어렵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저축은행의 설립배경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역할과 영업의 구조적 현황을 살펴보고, 당국의 정책과 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연결지어 보았으며 특히,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릴해저드,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계열화가 저축은행산업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집중 조망해 보았다. 또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저축은행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저축은행 출현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계열화의 폐해를 돌이켜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저축은행 합병의 유연성 확보이다. 저축은행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영 업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P2P시장의 확 대, 최고금리 인하 압력, 제1금융권의 중금리시장 진출 가시화 등은 저축은행 영업기반을 잠식하는 핵심적인 사안들이며, 저축은행이 원하는 경우 이러한 업 체들과의 합병에 유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부실기관이라는 굴 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저축은행 내부통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은행수준의 자격요건 평가, 적격성 심사등의 기준과 규제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감사와 사외이사, 준법감시인의 역할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감독 기능 역시 임기응변식의 정책추진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정책추진과 부실 발생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취급업무에 따른 정책과 감독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저축은행이 더 이상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서민과 영세 중소



기업의 금융편익 도모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거시적 관점의 정책수립 및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보면 저축은행업계가 위기때마다 부실화라는 굴 레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구조에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없는 대주주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의존하는 형태의 경영구조로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당국의 미시적 제도개선은 메아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당국의 정책 방향과 효과에 대하여 연구의 관점을 집중함으로써, 저축은행산업의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아쉬움은 통계조사 기법을 통한 분석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료수집의 한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79개 저축은행이 규모나 영업전략, 중앙과 지방이 천차만별이며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퇴출 또는합병 등으로 인하여 각 저축은행의 자료를 비교분석하기에는 변별력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1945

이러한 모자람은 누군가의 후속연구에서 보완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본고가 제시한 방법론과 수집한 자료는 후속연구에 미약하나마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며 하는 바람과, 저축은행에 대한 객관적인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다양한 논의들이 풍부하게 개진되어, 저축은행 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 저축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감상조(2011),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한국금융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 p.54.

김동열,한상범(2011),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와 낙하산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p.195.

김종현(2015),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pp.11-13.

김형찬(2015), 저축은행 신용시장 변화와 CSS운영 현황 및 시사점, NICE평가 정보, p.49.

박용한(2014), 한국의 저축은행 연구, 효민디엔피, pp.37-284.

박창균(2011), 저축은행의 사업구조 재편과 서민금융 발전방안, 한국금융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 pp.99-100.

이규복(2015), 저축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pp.15-16.

장윤정(2013),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 과 석사학위 논문, pp.61-64.

저축은행중앙회(2015), 최근 국내 P2P시장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p.4.

박찬균, 정찬우, & 이시연(2011), 상호저축은행 백서, kif, pp.100-325.

최석표(2014),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pp.49-50.



(유관기관)

대한금융단(1978), 한국금융 30년사, pp.838-842.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pp.75-228.

한국은행(2010), 한국은행 60년사, 8.3긴급경제조치, pp.381-382.

(정책 및 감독기관)

금융감독원(2014), 저축은행 주요 감독방향

금융위원회(2011), 저축은행의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황보고

(2014a), 저축은행 발전전략 위원회'자체 추진과제 추진현황
(2014b),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c), 금융통계월보, 상호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2015a),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2015b),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2015c),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5d),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pbfunds.go.kr)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_____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kdic.or.kr)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fsb.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kamco.or.kr)

(관련법규)

저축은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도자료)

경향신문, 2014. "일본자본, 서민금융 급속 장악" 11월 7일 2015. "관리감독 사각' 일본계 대부업체시장 40% 장악" 4월13일 국민일보, 2015. "부활하는 저축銀--- 사업다각화로 저금리 악재 넘었다." 8월 17일 내일신문, 2015. "중금리대출 지주사 저축은행만 혜택" 9월 11일 뉴스웨이, 2015. "저축은행, 캐피탈 매물 수두룩" 9월 22일 디지털타임즈, 2015. "저축은행 P2P대출 허가 보류되나" 9월 1일 머니투데이, 2015. "대부업저축銀 진출 1년 --- 나아진게 없다". 5월 8일 2015. "막바지 교통정리 저축은행, 인터넷銀 진출이어 P2P도 넘 봐" 9월 3일 2015. "맥킨지-핀테크 열풍에 은행 수익 3분의 2 줄어들 것" 10월 1일 2015. "해외자본 밀려드는 저축은행 2금융시장 질적 성장 이룰까" 10월 29일 2015. "2금융권 일본계자본, 韓시장 공략 색다르네" 11월 2일 2015. "핀테크가 새 수익원 -- 기술중기들 저축은행 노크" 11월 12일 매일경제, 2015. "7년만에 흑자---저축銀 부활?" 8월 12일 서울경제, 2014. "저축銀 회생기운 감돌지만-CSS보강.먹거리 다각화 서둘러야" 12월 24일 2015. "1호 인터넷銀, 승자는 누구?" 10월 2일



2015. "업계외면에 멈춰선 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10월 5일
2015. "최고금리 34.9%에서 29.9%로 내려" 11월 10일
아시아경제, 2015. "日자본, 금융지주까지 야금야금" 7월 8일
아시아투데이, 2015.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부실털고 흑자전환 성공" 9월 16일
2015.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 놓고 시중銀 딜레마" 10월 1일
2015. "인터넷銀 비참여 은행, 모바일 강화로 생존모색" 10월 7일
아이뉴스, 2015.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 건전경영 계획 이행중" 2월 23일
아주경제, 2015. "중금리대출 압박에 속타는 저축銀" 9월 30일
이데일리, 2015. "실력 없으면 도태, 저축은행들 "뭉쳐야 산다", 9월 7일
2015. "대부업 최고금리 내년부터 27.9%" 12월 3일
2014. '일본계.토종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삼국지' 11월 24일
2015. "당국, 외국자본 저축銀 예의 주시" 2월 3일
2015. "금융당국, 저축은행 외형확대 제동" 9월 11일
조선일보, 2015. "연체율 0%, 은행도 놀란 P2대출" 미운오리였던 저축은행, 부 실 털고 흑자행진
2015. "미운오리였던 저축은행, 부실 털고 흑자행진" 5월 21일
2015. "은행 지점의 종말 - 사이버 금융시대 본격화" 9월 2일
중앙일보, 2015. "완판 행진 P2P 대출상품, 소액 분산 투자가 답" 11월 5일
파이낸셜 뉴스, 2015. "저축銀, 자영업자 사로잡자. 관계형 금융으로 틈새 공략' 8월 19일
2015. "저축은행 '은행 징검다리론' 이대로는 협조 안해" 9월 21일
2015.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3개 컨소시움 비교해 보니" 10월 1일
파이낸셜 뉴스, 2015. "징검다리론 출시 잠정연기" 10월 15일



한국경제, 2014. "저축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9월 18일
_____2014. "OK,푸른 등 저축은 9곳, 방카슈랑스 연내 취급" 10월 10일
해럴드경제, 2014. "핀테크 올라타자, 은행도 바빠졌다." 11월 12일
bridge경제, 2015.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없앤다" 9월 9일
FNTIMES.com, 2015. 저축은행, 예보료 할인 "청신호" 10월 18일
_____2015. "대부계 저축은행 '자본확충 러시" 7월 9일
MK뉴스, 2015. "사면초가 위기의 저축은행 탈출구는 어디에" 7월 21일
____2015. "곽범구 예보 사장,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고민해 보겠다." 11월 9일
MoneyWeek, 2015. "규제 묶는 저축은행, 웃음풀린 저축은행" 7월 23일
NAVER뉴스, 2015. "저축은행업계, 다섯분기 연속 흑자 행진" 11월 12일
the bell, 2015. "저축은행 너무 죄는 금융당국" 8월 26일
____2015. "증권계 저축銀, 금융지주보다 잘나간 이유는" 8월 12일

1945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서울)

공통 : (2014(b) = 2014. 7. 1 ~ 2015. 6.30)

(단위 : 십억원, %)

00.	(2014(0) - 201	I. /. I	2010.	0.50)				(12 11	. нче, /0)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증가율(a/b)
	HK ^{₹1)}	2,437	1,833	2,665	2,457	2,582	2,492	2,054	17.58
	대신	,	1.8.26 ⁻ 중앙부4 민(강원)	산(서울)	,	1,195	694	845	21.76
	동부	644	886	1,127	1,732	1,889	1,244	1,087	12.62
	서울	588	844	902	1,304	1,565	l \	!피대부 이전)	_
	신안	197	667	737	977	1,137	1,159	911	21.40
서울 (대)	진흥	942	1,430	1,784	2,220	1,512		'융지주 이전)	_
(41)	푸른	769	1,133	1,365	1,524	1,270	1,051	878	16.46
	현대스위스 (SBI) ^{주2)}	860	1,355	1,796	2,968	2,603	3,752	3,900	3.94
	현대스위스2	573	626	967	1,916	1,783	(SBI로	합병)	_
	JT친애 ^{주3)}		2.10.9 디 범, 201		1543	_			
	OK ^{₹4)}					예나래(OK1,2 [†]		1616	_
	소 계	7,010	8,774	11,343	15,098	15,536	10,392	12,834	23.50
	하나	,	l2.2월 7 에이스 한국(서·	(인천)		671	888	982	10.59
	КВ		l월 제일 기(경기)			922	578	758	31.14
서울	W	260	469	528	1,074	882		'융지주 이전)	_
(중)	현대	245	554	683	619	736	1,102	1,150	4.36
	예가람	_	312	337	262	332	312	435	39.42
	스카이	165	271	340	366	333	320	326	1.88
	삼성	217	292	361	430	475	439	395	10.02
	민국	177	367	379	431	438	389	391	0.51
	더케이	365	447	575	549	577	462	496	7.36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증가율(a/b)
	OSB ^{주5)}	364	569	668	690	652	855	1,170	36.84
	우리금융	`	삼화저 예약이전		717	649	844	(NH로 매각)	_
	한신 ^{주6)}	521	529	592	1,192	732	410	326	20.49
	신한	(2012.1		·토(경기 서울) 계	759	0.26			
	웰컴	(2013.4	1.12 신리	라(인천) 계약	솔(부산)	1,141	_		
	NH	(2012.9		르몬저축 리금융7			2014.6	790	_
	소 계	2,314	3,810	4,463	6,330	7,399	7,360	9,119	23.90
	삼보	32	32	33	29	29	37	32	13.51
서울	신민	144	220	261	229	138	117	118	0.85
(소)	조은	(201	5.1.16 :	골든브	릿지 저	축은행	인수)	241	
	소 계	176	252	294	258	167	154	391	153.90
=	권역 합계	9,500	12,836	16,100	21,686	23,102	17,906	22,344	24.78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1) HK저축은행: 2014.10,1 부산HK저축은행과 합병업계 2위로서 미국계 사모펀드 (PEF)인 JC플라워가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2015. 8. 31 세계일보)

주2) SBI 저축은행 : 2014.10.14 SBI 1,2,3,4 합병 최대주주 에스비아이 그룹 67.20%

주3) 친애저축은행 최대주주: KC카드 100%

주4) OK저축은행 최대주주 :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98%

주5) OSB 최대주주 : ㈜ORIX Corp. 76.77%

주6) 유안타그룹에 매각됨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인천·경기권)

(단위: 십억원, %)

인천. 경기 (대)	-1 A-1	스피니	2005	2005	2000	2011	2012	2012()	,	: 百위전, /o)
인천. 경기 (대)	권역							. ,	` '	(, ,
인천. 경기 (대) 경기 612 1,666 2,161 2,681 1,890 (대) 구기 대학 이전) - 교학 전체 한별(가교) 제학 이전 전체 한별(가교) 제학 이전 전체 한별(가교) 제학 이전 전체 258 252 2.33 인상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63 급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기다하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산신 247 359 423 463 451 (기음이 인수) -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전체 전체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1.50 전체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50 전체 219 310 310 385 548 555 523 449 14.50 전체 219 310 310 385 548 555 523 449 14.50 전체 219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한국투자	630	1,011	1,303	1,201	1,230			34.46
(대) 경기 612 1,666 2,161 2,681 1,890 (KB급용지주 계약이전) - 세약 이전) - 선한 (2012.11.16 진흥(서울) 및 예한별(가교) 계약이전 영향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무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급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기주기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삼신 247 359 423 463 451 (키운이 인수) - 남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주의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제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영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인천. 영청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연천. 영청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페퍼지축은행 - 100 102 102 100 102 100 102 100 102 100 102 100 100	ا د اه	신라	950	1,106	1,271	1,621	1,583			_
(대) 경기 612 1,666 2,161 2,681 1,890 (RB급당시수 계약이전) 소 계 2,753 4,639 5,918 7,212 6,344 2,684 3,089 15.09 신한 (2012.11.16 전흥(서울) 및 예한별(가교) 계약이전 삼점 133 183 191 316 304 258 252 2.33 안양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급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⁵¹⁾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삼신 247 359 423 463 451 (기윤이 인수) -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기	모아	561	856	1,183	1,709	1,641	1,468	1,454	0.95
신한 (2012.11.16 전흥(서울) 및 예한별(가교) 제약이전 800 (서울로 이전) - 영점 133 183 191 316 304 258 252 2.33 인양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금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1)}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삼신 247 359 423 463 451 (키움이 인수) - 남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전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복) 계약이전) 718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명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음광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 수 시 전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경기	612	1,666	2,161	2,681	1,890			_
신한 (2012.11.16 전흥(서울) 및 예한별(가교) 제약이전 800 (서울로 이전) - 영점 133 183 191 316 304 258 252 2.33 인양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금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1)}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삼신 247 359 423 463 451 (키움이 인수) - 남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전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복) 계약이전) 718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명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음광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 수 시 전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변환병(가교) 계약이전 800 (지불도 이전) 삼정 133 183 191 316 304 258 252 2.33 안양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급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주1)}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산산 247 359 423 463 451 (기울이 인수) - 남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센과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9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체약이전) 키울 (2013.19월 날푸른저축은행, 400 458 14.50 키울 (2013.19월 날푸른저축은행, 400 458 14.50 기울 (2013.19월 남산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 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연천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소) 을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 인수) 소 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소 계					6,344	2,684	3,089	15.09
인천. 경기(중)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급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주1)} -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삼선 247 359 423 463 451 (기움이 인수) - 14° 12 12 12 12 130 385 548 477 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한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8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인수) 537 670 - 2 11 12월 한울(전북) 체약이전) 기움 (2013.1월 삼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2 12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8명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소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의 연수) - 2 2 2 276 270 (폐퍼저축은행 9.66 7.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2 예호	2.11.16 ⁻ 한별(가고	진흥(서 1) 계약	울) 및 이전	(서울로	및 이전)	_	
인천. 경기 (중) 인천.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37 (중) 인천. 경기 (중)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8평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제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71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명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소 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133	183		316	304		252	2.33
변천. 경기 (중) 변화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JT ^{주1)}			148	212	239	326	320	355	387	9.01
인천. 경기 (중) 보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387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기유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400 458 14.50 기유 (2013.10월 날푸른저축은행, 2013.10월 날푸른자축은행, 2013 400 458 14.50 의원국 2013.11월 삼산자축은행인수) 537 670 - 2013.11월 삼산자축은행인수이전상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림	218	287	320	336	338	270	296	9.63
인천. 경기 (중) 입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생람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787 670 -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연권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142	241	297	376	358	350	446	27.43
임전. 경기 (중) 입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센남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58 14.50 키움 (2013.1월 삼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영천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출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 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JT ^{주1)}	_	401	712	457	555	444	391	11.94
정기 (중)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세람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키움 (2013.1월 삼산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 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 인수) 소 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اج ام		247	359	423	463	451	(키움이] 인수)	_
(중)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세람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함병) -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키움 (2013.1월 삼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 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연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 인수) 소 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남양	231	293	352	467	495	460	432	6.09
변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385 전체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385 전체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기움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537 670 -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인성	265	340	362	497	472	458	477	4.15
현대스위스 - 487 659 780 (SBI로 합병) -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키움 (2013.1월 삼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 이 인수)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0)	세람	219	310	385	548	555	523	449	14.15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페퍼 (2013.10월 늘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키움 (2013.1월 삼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 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출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 이 인수) 소 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한화	415	546	415	613	728	741	482	34.95
페퍼 (2013.10월 날푸른저축은행, 12월 한울(전북) 계약이전) 400 458 14.50 키움 (2013.1월 삼신저축은행 인수) 537 670 -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 이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487	659	780	(SBI로	합병)	_
기유		공평 ^{주2)}	119	152	186	703	686	671	432	35.62
소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출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 이 인수)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페퍼						400	458	14.50
영진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양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 인수)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키움	(20:	13.1월 🍐	삼신저축	는은행 인	<u>l</u> 수)	537	670	_
인천. 경기 (소) 발표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인수)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소 계	2,137	3,324	4,369	5,761	6,842	5,467	5,172	5.40
정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폐퍼저축은행이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99	107	123	96	110	102	99	2.94
인천. 경기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인수)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안국	121	136	157	185	194	203	224	10.34
경기 (소)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평택	133	169	204	207	195	161	155	3.73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페퍼저축은행이인수) - 소계 692 931 1,111 1,274 1,281 954 989 3.67	인천.	융창	166	181	228	248	257	238	261	9.66
글푸른 65 176 222 276 270 이 인수)	1	인천	108	162	177	262	255	250	250	0.00
	(소)	늘푸른	65	176	222	276	270			_
권역 합계 5,582 8,894 11,398 14,247 14,467 9,105 9,250 1.59										
									9,250	1.59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1)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2015. 1. 27 : 최대주주(JT로)및 사명변경

주2) 적기시정조치중 두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받고 있는 공평저축은행은 대주주인 애스크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경영정성화를 이뤄내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세계일보 2015.8.31)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부산·울산·경남권)

(단위: 십억원, %)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 립크 <i>년, 제</i> 증가율(a/b)
	BNK			라임(서 계약이		661	735	756	2.86
	IBK				트2(부산] -행) 계약		468	561	19.87
	진주	150	219	305	302	301	315	350	11.11
	고려	384	765	670	444	374	403	526	30.52
부산 울산	우리	438	358	474	409	443	396	305	22.98
출산 경남 (중)	영남	360	349	581	743	603		융지주 계 이전)	_
	솔로몬		1,161	1,084	1,033	947	(우리금융지주 계약이전)		_
	토마토	151	200	200	1,618	805	(신한금융지주 계약이전)		_
			All.						
	소 계	1,483	3,052	3,314	4,549	4,134	2,317	2,498	7.81
	솔브레인	25	37	62	132	163	156	164	5.13
	조흥	111	125	139	152	147	161	188	16.77
	동원제일	176	226	242	166	172	163	194	19.02
부산	에스앤티	31	3	131	167	162	95	111	16.84
울산 경남	국제	101	125	163	206	169	159	163	2.52
(소)	DH ^{₹1)}	195	213	264	267	228	154	158	2.60
	흥국	84	69	203	270	230	123	84	31.71
	НК	130	219	154	289	252	220	(서울HK 합병)	_
	소 계	853	1,017	1,358	1,649	1,523	1,231	1,062	13.73
7	년역 합계	2,336	4,069	4,672	6,198	5,657	3,548	3,560	0.34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1) '화승저축은행'은 2015.10.1자로 'DH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대구·경북·강원권)

(단위: 십억원, %)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증가율(a/b)
	엠에스	292	349	301	307	338	341	360	5.57
	강원	52	76	78	47	47	41	31	24.39
	대원	72	49	51	59	54	37	28	24.32
	대아	12	70	68	68	61	40	28	30.00
대구	구미	60	93	98	88	91	89	99	11.24
경북	오성	80	99	103	100	103	106	107	0.94
강원	삼일	107	101	106	99	106	75	60	20.00
	대백	90	128	138	164	182	151	143	5.30
	참	60	69	138	221	283	366	467	27.60
	유니온	236	228	222	229	233	249	243	2.41
	드림	44	114	186	288	283	275	320	16.36
권(역 합계	1,105	1,376	1,489	1,670	1,781	1 <i>,</i> 770	1,886	6.55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 강원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신고한 2015년 6월말 BIS비율이 감독규정상의 최저비율인 6%를 밑돌아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BIS비율이 (-)를 나타내고 있는 포항과 경주에 영업점을 둔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에 대하여도 대주주의 증자여부를 지켜보면서 매각 방안을 검토중이다(세게일보 2015. 8. 31)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광주·전남·전북·제주권)

(단위: 십억원, %)

								`	, , ,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증가율(a/b)
コス	스마트	263	240	243	335	375	401	410	2.24
광주 전남 전북	골든브릿지	315	374	401	347	318	231	(조은에 합병)	_
전국 제주 (중)	호남솔로몬	106	276	405	458	441	(우리금 계약·	·융지주 이전)	_
(°)	소 계	684	890	1,049	1,140	1,134	632	410	35.13
	센트럴	73	74	76	81	88	90	92	2.22
	더블 주1)	75	84	95	92	101	141	148	4.96
기고	대한	142	187	209	137	139	149	137	8.05
광주 전남	스타	158	160	209	156	140	132	119	9.85
_ 선급 전북	동양	144	194	175	185	235	244	218	10.66
제주 (소)	삼호	(20			전북)및 후 3자	보해(* 매각)	전남)	156	
	스마일	174	220	243	336	269	(OSB로		_
	소 계	766	919	1,007	987	972	756	870	15.08
	권역 합계	1,450	1,809	2,056	2,127	2,106	1,388	1,280	7.78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1) 2013. 9월 무등저축은행 상호변경 (무등 → 더블)



<부록 1> 권역·자산규모별 총자산 추이(대전·충남·충북권)

(단위: 십억원, %)

	(EII - EI - E, 70)											
권역	은행명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a)	2014(b)	증가율(a/b)			
대전	세종	153	265	342	348	326	304	394	29.61			
충남	아주	588	606	669	618	503	750	775	3.33			
충북	현대스위스3	100	126	130	733	725	(SBI로 합병)		_			
(중)	소 계	841	997	1,141	1,699	1,554	1,054	1,169	10.91			
	서일	67	79	77	63	57	(웰컴으.	로 합병)	_			
	청주	78	98	109	107	125	143	153	6.99			
대전	오투	121	129	116	112	103	146	208	42.47			
충남 충북	대명	83	109	128	123	133	141	157	11.35			
(소)	아산	95	121	134	12	154	150	149	0.67			
	한성	79	85	119	178	212	225	229	1.78			
	소 계	523	621	683	595	784	805	896	11.30			
	권역 합계	1,364	1,618	1,824	2,294	2,338	1,859	2,065	11.08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부록 2>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년도별 ^{주1)}	일반현황			BIS비율	고정이하	총자산 순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회사(개)	점포(개)	인원(명)	DIO川宦	여신비율	문의의활 (ROA)	でのうせ (ROE)
2004.6	114	245	6,060	8.18	12.37	0.06	1.32
2005.6	112	250	6,333	7.14	15.42	-0.96	-21.27
2006.6	110	264	6,524	9.16	10.9	1.28	23.91
2007.6	109	290	7,233	9.09	10.21	1.24	17.85
2008.6	107	325	7,825	9.08	9.38	0.58	7.44
2009.6	106	344	7,828	9.43	10.34	-0.08	-1.18
2010.6	105	371	8,459	9.05	10.55	-1.39	-21.60
2011.6	105	344	8,481	0.84	26.93	-7.13	-104.79
2012.6	97	381	8,386	4.07	24.49	-4.40	-60.42
2013.6	91	341	7,481	9.95	21.31	-2.43	-29.85
2014.6	87	329	7,349	14.28	18.97	-1.31	-12.35
2014.12	80	326	7,971	14.01	15.72	N	N
2015.6	79	328	8,802	14.37	12.36	1.30	11.63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경영현황(분기보)

주1) 저축은행의 결산기준일은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임

2015년도부터는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변경하여 12월말로 통일시킴



<부록 3> 저축은행 영업한도

구 분	관련근거	감독규정 기준			
개별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2011.11.21)	 법인:자기자본의 20/100내에서 최고 100억원 (동일인 명의 예적금 차감) 개인사업자:자기자본의 20/100내에서 최고 50 억원(동일인 명의 예적금 차감) 가계자금:자기자본의 20/100내에서 최고 8억원 (2015.9.10. 상향 개정)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시행령 제9조	자기자본의 25/100내			
거액신용대출한도	법 제12조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 이내			
출자자대출금지	시행령 제30조	발행주식총수의 2/100이상 소유 주주(주주의 특 수관계인 친족 등)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감독규정 제22조의 2	총여신의 50% 이상			
PF대출①	TPHI.	총여신의 20% 이내			
건설업②	감독규정	총여신의 30% 이내			
부동산 및 임대업③	제22조의 3	총여신의 30% 이내			
부동산 관련업종 포괄 여신한도(①+ ②+ ③)		총여신의 45% 이내			
대부업체	금감원	총여신의 5% 및 300억원중 적은 금액			
스탁론	권유사항	자기자본 1배			

관련근거 : 저축은행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